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8 ~ 2022

제 출 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본보고서를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6

사단법인 산업경제개발연구원

목 차

CONTENTS

요 약	1
-----	---

01 연구의 개요 6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7
2. 계획의 범위	8
3. 계획수립방법	10

0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법제 11

1. 국내법	13
2. 국외법	24
3. 시사점	29

0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정책 현황 31

1. 중앙정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33
2.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45
3. 시사점	54

04 경상북도 장애인 및 장애인 차별 현황 55

1. 경상북도 장애인 현황	57
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70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현황	73
4. 경상북도 장애인 실태 및 여건 진단	101

05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105

1. 비전과 정책목표	107
2.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111
추진전략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113
추진전략 2.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확충	137
추진전략 3.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165
3. 기대효과.....	185
4. 사업비	188

06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193

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비교	195
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현황	196
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세부사항	198
4.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204

목 차

CONTENTS

표 목 차

[표 2-1] 광역 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7
[표 2-2]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8
[표 2-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9
[표 3-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33
[표 3-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안)	34
[표 3-3]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37
[표 3-4]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주요 추진과제	38
[표 3-5]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추진과제별 목표	42
[표 3-6]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세부사업	45
[표 3-7]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총괄	47
[표 3-8]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핵심사업	51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52
[표 4-1] 전국 및 경북 등록장애인 추이(2006~2016)	58
[표 4-2] 전국 시·도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60
[표 4-3] 경북 시·군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63
[표 4-4] 경북 연령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65
[표 4-5] 경북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66
[표 4-6] 경북 시·군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68

[표 4-7] 경북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70
[표 4-8] 경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71
[표 4-9] 경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생상품판매시설 현황	72
[표 4-10]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73
[표 4-11]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75
[표 4-1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78
[표 4-13]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 경험	80
[표 4-14]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81
[표 4-15] 자립생활권(생활권련)·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	83
[표 4-16] 자립생활권(생활권련)·주거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84
[표 4-17]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 경험	86
[표 4-18]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86
[표 4-19]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	88
[표 4-20] 노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89
[표 4-21] 문화권 관련 차별 경험	90
[표 4-22] 문화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91
[표 4-23] 법적 권리 관련 차별 경험	93
[표 4-24] 법적 권리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94
[표 4-25]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	95
[표 4-26] 참여자 특성	97
[표 4-27] 경상북도 장애인 실태 및 여건 진단	101
[표 5-1]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사업	109
[표 5-2]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13
[표 5-3] 장애인 인권 차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14
[표 5-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인권센터의 역할 및 업무	116
[표 5-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117

[표 5-6]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형태	117
[표 5-7]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18
[표 5-8]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법률 서비스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120
[표 5-9]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체계 정비 연차별 추진계획	122
[표 5-10]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비교	123
[표 5-11]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125
[표 5-12]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127
[표 5-1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29
[표 5-14]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현황	130
[표 5-15]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역할	131
[표 5-16]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132
[표 5-17] 경상북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	134
[표 5-18] 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요 실시기관	134
[표 5-19] 장애 인식개선 홍보 방법	135
[표 5-20]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136
[표 5-21] 경상북도 재활병원 개원 연차별 추진계획	141
[표 5-22] 경상북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44
[표 5-23]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46
[표 5-24]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48
[표 5-2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49
[표 5-26]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50
[표 5-2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152
[표 5-28]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연차별 추진계획	154
[표 5-29]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56
[표 5-30] 저상버스 도입 현황 및 '17년 계획	158
[표 5-31] 저상버스 도입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59
[표 5-32]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	160

[표 5-3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61
[표 5-34]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 연차별 추진계획	162
[표 5-35]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163
[표 5-36]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168
[표 5-37] 장애학생지원사업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69
[표 5-38]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70
[표 5-39]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지 현황	171
[표 5-4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연차별 추진계획	172
[표 5-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73
[표 5-42] 경상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연도별 판매실적	174
[표 5-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75
[표 5-4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76
[표 5-45]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77
[표 5-46]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78
[표 5-4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비교	179
[표 5-4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연차별 추진계획	180
[표 5-49]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현황	181
[표 5-50]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182
[표 5-51]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184
[표 5-52] 기대효과	185
[표 5-53] 전체 사업비 총괄	188
[표 5-54] 추진전략1의 사업비 종합	189
[표 5-55] 추진전략2의 사업비 종합	190
[표 5-56] 추진전략3의 사업비 종합	191
[표 6-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 비교	195
[표 6-2]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조항 여부 및 설치·운영 현황	197

[표 6-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형태	199
[표 6-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세부 설치기준	202
[표 6-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력 자격요건	203
[표 6-6]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206

목 차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3-1]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41
[그림 3-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45
[그림 3-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47
[그림 3-4]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구성	50
[그림 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구성	52
[그림 4-1] 전국 및 경북 등록장애인 추이(2006~2016)	57
[그림 4-2] 전국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59
[그림 4-3] 전국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59
[그림 4-4] 경북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	61
[그림 4-5] 경북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62
[그림 4-6] 경북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64
[그림 4-7] 경북 연령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64
[그림 4-8] 경북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66
[그림 4-9] 경북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67
[그림 4-10]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73
[그림 4-11]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75
[그림 4-12]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경험과 생각 비교	82
[그림 4-13]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경험과 생각 비교	85
[그림 4-14]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경험과 생각 비교	87
[그림 4-15] 노동권 관련 차별경험과 생각 비교	89
[그림 4-16] 문화권 관련 차별경험과 생각 비교	92

[그림 4-17] 법적 권리 관련 차별경험과 생각 비교	94
[그림 5-1]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107
[그림 5-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과의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	122
[그림 5-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협력체계 구축	125
[그림 5-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132
[그림 5-5] 경상북도 재활병원 의료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140
[그림 5-6] 장애인보조기기센터 협력체계 구축	146
[그림 5-7]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148
[그림 6-1] 중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체계도	196
[그림 6-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단독형	207
[그림 6-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혼합형	208
[그림 6-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분리형1	209
[그림 6-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분리형2	210
[그림 6-6]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업무수행체계도	211

요약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적 이행 및 경상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정책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계획수립 방법

-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됨.
1장은 연구의 개요, 2장에서 4장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문헌조사, 자료 분석, 심층면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한 조사연구이며, 5장은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6장은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으로 구성됨.

- 2장에서 4장까지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국내·외 법제 및 조례,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장애인 정책, 경북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경북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에서 조사한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2015)’ 자료를 활용하여 경북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및 안전권 등 여러 권리 영역에 대한 차별의 경험과 인식, 조치 시행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기초연구를 통해 도출된 경상북도 장애인의 실태 및 여건 진단은 다음과 같음.

실태 및 여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행정구역 : 23개 시·군 보유 • 도·농 복합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격차로 인해 복지 소외 지역 대처 필요 • 지역 간, 지역 내 이동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감소 추세 • 60대 이상 장애인구 : 5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장애인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사업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본청 장애인 조례 : 13개 •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된 지역 :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에 비해 조례 다소 부족 (광주 20개, 서울, 경기, 제주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차별, 인권 전담 기관 부재 •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필요 •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에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 관계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동 및 시설 접근 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로 인한 진료, 치료 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고려한 진료,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지원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거부, 부당해고 등의 열악한 고용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여건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 확대 필요

- 5장은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일관성,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검토하여 계획의 비전과 3대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34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함.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을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람중심 행복한 경북”으로 설정함.
-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 가치를 표현하는 경상북도의 도정구호인 “사람중심! 경북세상!”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이에 따른 3대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음.

- 물리적·의식적 개선을 통한 장애인 학대와 차별의 효과적 방지 및 예방

장애인 학대, 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선과 함께 의식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으로 학대와 차별을 방지 및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정당하고 실효적인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보장적 권리 향유실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며,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적극적이고 심화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복합적 어려움 완화 및 해소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3대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보다 체계적으로 물리적·의식적인 개선을 통해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및 인권보장

-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확충

일상생활 기본 권리인 건강·의료권, 교육·문화권, 이동·접근권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장

-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고용노동권 보장, 기본생활권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자립생활 분위기 조성 및 인프라 확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사업은 34개이며, 추진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 추진사업	2017년	2018년~2022년
행정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자치법규	-	정비·확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예정)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법률서비스	-	지원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조사 : 2년마다 1회 모니터링 : 연 1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설치·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지역 2개 권역	교육지역 4개 권역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	강화
건강의료권	경상북도 재활병원	-	개원('19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	설치·운영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설치·운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5개소	24개소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106명	125명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	5개 지역	10개 지역
교육문화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	계획수립, 실시
	장애인 문화여가프로그램 공모 실시	-	계획수립, 실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	확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연구

구분	세부 추진사업	2017년	2018년~2022년
이동접근권	저상버스	194대	340대 달성('19년) 연 20대씩 추가보급('20~'22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97대	연 20대씩 추가보급('20~'22년)
	장애인 편의시설	-	확충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200대	200대
고용노동권	장애인 일자리 제공	1,316명	1,400명
	장애학생지원사업(워크투게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운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유치('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	8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0.6%	1.0%
기본생활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개소	13개소
	발달재활서비스	2,638명	2,730명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700명	800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2개소	4개소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2개소	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10명, 10백만원	15명, 14백만원

○ 본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전체 34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2,294백만원임.

I .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 2015년 12월 31일,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이하, ‘경북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경북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논리 및 정책 대응이 필요함.
- 2017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에 따른 운영과 향후 지역자원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방향성 및 역할 재고가 필요함.
- 도내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자립정착, 취업, 사회복귀 등 지역사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곳곳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차별요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 계획수립의 목적

- ‘경북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정책의 비전,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경북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위한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 모색
 -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참여확대 방안 마련
 -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 계획 수립
 -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기타 ‘경북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대응책 등

2.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6년도
- 계획기간 : 2018 ~ 2022년(5년)

2)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23개 시·군)
 - (10개 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 (13개 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3)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및 사례 수집·분석
 - 해외 선진국 및 중앙행정기관, 타 시·도의 인권 관련 정책(법·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 해외 선진국 및 타 시·도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사례관리 연구
- 경상북도 장애인 현황 및 특성 분석
 - 도내 장애인의 유형, 성별, 연령, 거주형태 등 현황, 욕구·특성 및 이와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복지자원 현황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 도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기 연구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안) 수립
 - 기본목표, 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
 - 핵심 또는 분야별 등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변화와 전망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 방안
- 인권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 실효적인 운영 방향 및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
- 재·행정상의 지원 및 자원조달 방안

3. 계획수립 방법

- 계획수립방법은 문헌조사, 자료 분석,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국내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법제 및 조례,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사례 또는 기본계획, 경상북도 장애인 인구나 장애인 복지기반 현황분석 등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진행함.
- 경상북도 장애인의 인권·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에서 조사한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2015)’ 자료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및 안전권 등 여러 권리 영역에 대한 차별의 경험과 인식, 조치 시행 필요성에 대해 분석함.
- 계획수립 방향 설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법제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법제

1. 국내법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 등 총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조에서 9조는 목적, 장애와 장애인, 정의, 차별행위, 차별판단,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 10조에서 12조는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13조에서 14조는 교육에 대한 차별금지, 15에서 2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 26조에서 27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 대한 차별금지, 28조에서 29조는 모·부성권, 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 30조에서 32조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함.
 - 33조에서 37조는 장애여성 등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38조에서 45조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해 규정함. 46조에서 48조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에 대한 규정, 49조에서 50조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총 9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조에서 15조는 목적, 장애인의 정의 등, 기본이념,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중증장애인의 보호,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차별금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민의 책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국회에 대한 보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의 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

- 17조에서 30조는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주택 보급, 문화 환경 정비 등, 복지 연구 등의 진흥,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의 규정함.

- 31조에서 52조는 실태조사, 장애인 등록,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상담원, 재활상담 등의 조치,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의료비 지급,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자금 대여 등,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 구매, 생산품 인증, 인증 취소, 고용 촉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에 대해 규정함.

- 53조에서 56조는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동료간 상담에 대해 규정함.

- 57조에서 64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사후관리, 피해 장애인 쉼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

차 및 서비스 최저기준, 운영자의 의무, 감독,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대해 규정함.

- 65조에서 70조는 장애인보조기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및 폐쇄 등에 대해 규정, 71조에서 77조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의지·보조기,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기사자격증 교부, 국가시험의 실시 및 응시자격, 보수교육, 자격취소, 자격정지, 수수료 등에 대해 규정함.

- 78조에서 85조는 비용부담, 비용수납,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비용보조, 압류금지, 조세감면, 청문, 심사청구, 권한위임 등에 대하여 규정, 86조에서 90조는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함.

3)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6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조에서 4조는 목적, 정의 및 권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 5조에서 18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의 직무와 임기, 신분보장, 위원의 책임면제, 결격사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의 공개, 자문기구, 사무처, 징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 19조에서 29조는 위원회의 업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의견 청취,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청문회, 시설의 방문조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도서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함.

- 30조에서 5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진정의 각하 등,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조사 목적의 한계, 조사의 방법, 질문, 검사권, 위원의 제척 등, 진정의 기각, 합의의 권고,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구제조치 등의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의견진

술의 기회 부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처리 결과 등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함.

- 51조에서 55조는 자격 사칭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공무원 등의 파견, 불이익 금지와 지원에 대해 규정, 56조에서 63조는 인권옹호 업무방해,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자격 사칭, 비밀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비밀침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함.

4) 기타 장애인 인권보장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기타 법률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있음.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조례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장애평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 계획수립, 실태조사, 교육, 인권센터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2015년 12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표 2-1] 광역 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조례 제정일
경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2.31
서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부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6.04.03
대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5.03
인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광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3.02
대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8.05
울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11.03
세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10
경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6
강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충북	-	-
충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30
전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08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경남	-	-
제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2016년 5월 검색), www.moleg.go.kr

(2)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의 총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8.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은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포항이 유일하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광역 조례	기초지방자치단체			비고
		단체 수	조례 제정 수	조례 제정률	
합계	15	226	86	38.05	
경북	1	23	1	4.35	포항(2017.05 제정)
서울	1	25	15	60.00	
부산	1	16	5	31.25	
대구	1	8	2	25.00	
인천	1	10	5	50.00	
광주	1	5	5	100.00	
대전	1	5	4	80.00	
울산	1	5	3	60.00	
경기	1	31	23	74.19	
강원	1	18	1	5.56	
충북	0	11	4	36.36	
충남	1	15	6	40.00	
전북	1	14	6	42.86	
전남	1	22	5	22.73	
경남	0	18	1	5.56	
제주	1	0	0		기초지방자치단체 없음
세종	1	0	0		기초지방자치단체 없음

-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2016년 5월 검색), www.moleg.go.kr

[표 2-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경북(1)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2.31
	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7.05.02
서울(15)	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12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03.12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7.06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02.21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11.23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2.07.25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5.23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3.09.10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9.30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12.27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8.01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07.27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4.02.27
	강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7.02.22
부산(6)	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04.03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7.02.27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2.27
	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02.01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0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04.01
대구(3)	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5.30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2.30
	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01
인천(6)	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8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5.09.30

[표 2-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계속)

구분		조례명	제정일
인천(6)	연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07.28
	부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02.16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5.18
광주(6)	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3.02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2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6.10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3.30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11.05
	광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2.19
대전(5)	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8.05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6.10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2.06.15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10.14
	대덕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1.20
울산(4)	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11.03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12.29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9.28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12
세종(1)	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10
경기(25)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4.06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2011.08.11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10.12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6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3.15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18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1.11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0.08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4.20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4.06

[표 2-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계속)

구분	조례명	제정일	
경기(24)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6.17
	시흥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16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2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6.11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18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2.11
	이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0.01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5.06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05.09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03.18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2017.05.10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12.29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07.08
	가평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10
강원(2)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01.08
충북(4)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2.04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12.28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9.17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1.09
충남(7)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30
	천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06.07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5.01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7.16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6.02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25
	홍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25
전북(6)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08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04.10

[표 2-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계속)

구분		조례명	제정일
전북(6)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5.07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12.23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8.09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10.20
전남(6)	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6.19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11.19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8.06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4.20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03.26
경남(1)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9.25
제주(1)	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2016년 5월 검색), www.moleg.go.kr

(3)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에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3장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장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5장 보칙 등 22조로 구성되어 있음.
 - 1조에서 3조는 목적, 정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규정, 4조에서 10조는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인권보장 교육, 홍보,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규정, 11조에서 12조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센터의 위탁에 대한 규정, 13조에서 2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규정, 21조에서 22조는 준용,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국외법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에 UN총회에서 채택, 2008년 5월부터 발효됨.
-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해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함.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절 총론, 제2절 실체적 조항,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제4절 절차적 규정 등 총 50개 조항으로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이동권과 문화 접근권, 교육권과 건강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1조에서 4조는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 의무를 규정, 5조에서 34조까지의 조문에서는 평등과 차별금지,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생명권,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법 앞에서의 평등, 사법적 접근권, 개인의자유와 안전, 고문으로부터 자유, 학대로부터 자유, 개인의 존엄성 보호,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 가정과 가족 존중, 교육, 건강, 재활, 근로, 적절한 삶, 정치와 공직생활 참여, 문화·스포츠 참여, 통계 수집, 국제협력, 모니터링, 장애인권리위원회 등의 규정, 35조에서 50조까지는 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당사국과 위원회와 관계, 위원회 보고서, 당사국 회의, 기탁, 서명, 지역통합기구, 발효, 유보, 개정,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 미국의 장애인법은 1990년에 제정,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임.
- 미국 장애인법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를 모두 포함하며, 개인의 주요생활 활동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중대한 제한을 가지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이와 같은 손상의 기록,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장애로 간주함.

- 미국 장애인법은 입법 이유와 목적, 장애를 포함한 법의 주요 개념들의 정의를 다룬 서문(Preface)과 5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됨.
 - 제1장(Title I)은 고용(employment), 제2장(Title II)은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제3장(Title III)은 사인(私人)이 운영주체인 경우를 포함한 대중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제4장(Title IV)은 정보통신(communications), 제5장(Title V)은 기타사항(Miscellaneous Provisions)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타사항에는 미국 장애인법과 연방재활법의관계, 주 정부의 면책특권 부인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음.
- 미국 장애인법에 근거한 기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 영역별로 담당 기관이 있음.
 - 고용차별 문제는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EOC)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고소 제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 교육 : 시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과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Offices of Special Education and Tehabilitation Services)이 서로 연계하여 장애 차별에 대한 감독역할을 수행함.
 - 교통 :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공공교통, 교통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총괄하고 있음.
 - 주거 : 주거·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음.
 - 정보통신 : 연방정보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FCC)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감독, 지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공공시설과 관련된 차별의 경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신고, 처리 담당하며, 투표권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내의 투표국(Voting s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3)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

-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된 장애의 정의는 현재 존재하거나, 이전에 존재하였

거나, 미래에 존재할 수 있거나, 사람에게 전이된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대한 전손실 또는 부분손실, 신체의 일부에 대한 전손실 또는 부분손실, 질병, 질환을 유발하는 신체 조직의 존재, 질병,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조직의 존재, 신체 부분의 기능부전, 기형, 또는 상처, 장애나 기능부전 중 그것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다르게 인식하도록 유발하는 것, 사람의 사고 절차, 현실 인식, 감정 또는 판단 또는 그로 인한 정신장애행동에 영향을 주는 장애, 질병 또는 질환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시설, 토지와 주거 등의 거주, 상품·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 노동조합, 클럽 등의 참가,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9가지로 분야로 구성됨.
 - 고용(Employment), 교육(Education), 부지의 접근(Access to premises), 재화와 서비스, 시설물(Goods, services, and facilities), 숙박시설(Accommodation), 토지(Land), 클럽 및 단체 활동(Activities of clubs and associations), 체육활동(Sports), 연방정부법과 프로그램의 운영(Administration of Commonwealth Government laws and programs).
- 호주는 차별 시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인권과 기회평등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 HREOC)가 별도로 존재함.

4) 독일, 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 BGG)

- 독일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제거 및 방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인 생활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단순한 수혜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독일 장애인평등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은 의학적 결핍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참여의 저해라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을 신체기능,

정신능력 또는 정신건강이 6개월 이상 장기에 걸쳐 그 연령대의 비장애인의 상태와 상이하고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참여가 어려운 자로 규정함.

-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은 총 4장 15개절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 목적, 여성장애인, 장애, 장애물제거, 목표합의, 수화와 기타 의사소통방법 등 6개절로 구성
 - 제2장은 ‘평등과 장애물제거에 대한 의무’로 공권 수행기관 및 단체의 차별금지, 건설과 교통 분야에서의 장애물제거 구조, 수화와 기타 의사소통방법들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정보·정보지와 서식의 구성, 정보기술에서의 장벽 제거 등 5개절로 구성
 - 제3장은 ‘이의 신청’으로 행정적 혹은 사회복지법적 소송절차에서의 대리위임권한, 단체 소송권 등 2개절로 구성
 - 제4장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연방정부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관청 또는 대리인, 업무와 권한 등 2개절로 구성
- 독일 장애인평등법상에는 별도의 차별시정기구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을 통해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옴부즈맨을 임명,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함.

5)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

-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는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의미함.
- 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1995년 제정,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규정으로 구성, 제2장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제3장은 재화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및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와 관련한 차별금지를 규정, 제4장은 교육에 관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차별금지를 규정, 제5장에서는 대중교통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 제6장은 국가장애위원회(The National Disability Council)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국가장애위원회를 폐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권리 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 DRC) 설립, 정부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

음. 또한 장애인차별제거,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 증진, 장애인 치료와 재활의 장려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장애인단체, 기업과 고용주를 담당하는 조직들 등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음.

3. 시사점

- 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법제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장애의 정의를 통해 장애인을 시혜적 정책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 인권의 주체로서 대하며, 다양한 유형의 신체 및 정신 장애를 포함하여 사회·환경적인 영역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차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법제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고용, 이동 및 접근, 건강 등 일상생활의 여러 권리영역에 대해 보장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법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목적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다루기에는 대상과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선언적인 조항들이 다소 있음. 또한 권리 보장 체계나 방안이 소극적이거나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며, 이행수단이 임의적이거나 한정적인 법적 한계가 존재함.
-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권리의 보장이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인권 주체로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정책 현황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현황

1. 중앙정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1) 보건복지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표 3-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정책 과제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특수교육 지원강화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td> </tr> </table>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특수교육 지원강화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특수교육 지원강화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표 3-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안)

분야	중분류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1. 장애인 복지 · 건강 서비스 확대	1-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1-1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1-2 장애판정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1-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1-2-1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2-3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2-4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신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1-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2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3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3-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1-4-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4-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4-3 장애인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1-4-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1-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접근성 강화	1-5-1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5-2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5-3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모델 개발·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5-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국립재활원)
		1-5-5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2. 장애인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2-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1-1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1-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1-3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1-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1-5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표 3-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안)(계속)

분야	중분류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2. 장애인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2-2 특수교육 지원강화	2-2-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2-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2-3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2-3-1 일반학교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3-2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3-3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2-4-1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4-3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2-5-1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5-2 장애인체육정보·시설인프라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5-3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3.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3-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3-1-1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1-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2-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3-3-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3-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4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표 3-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안)(계속)

분야	중분류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3.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3-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3-4-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3-4-2 장애인창업지원확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3-4-3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4-4 장애인 고용 통계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4. 장애인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4-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4-1-1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
		4-1-2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4-1-3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4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5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4-2-1 저상버스 도입 확충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2-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도입 확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2-3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4-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추진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2-5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 확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3-1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3-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3-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4-4-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경북여성정책지원과
		4-4-2 여성장애인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복지지원과
		4-4-3 성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법무부 여성이동정책팀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4-5-1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5-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5-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참고 1 : ★ 신규과제

참고 2 :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수립과 추진에 참여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임.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증진중장기계획은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21대 추진목표, 57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표3-3]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비전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전략 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II.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III.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IV.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추진 목표	4대 전략목표, 21대 추진목표, 57개 주요 추진 과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급등록제 개선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실현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II.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기회 보장 4. 장애인 주거 지원제도 강화 5. 차별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7. 자기결정권 보장
	III.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2. 장애인권센터 설치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IV.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1.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 권리보장 강화 2. 정신장애 권리보장 강화 3. 장애여성 권리보장 강화 4. 장애아동 권리보장 강화

[표 3-4]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주요 추진과제

전략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3) 장애 범주 확대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비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직권신청의 활성화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1) 서비스 대상 확대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 4)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정보접근권 보장 (1) 「저작권법」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3) 수화언어 사용의 법적 보장
		2) 시설접근권 보장 (1) 「편의증진법」과 「건축법」의 연계 강화 (2)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2)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3)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II.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현실화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1)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2)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보조금고용 제도 도입 포함) 2) 근로 기회의 확대 (1)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2)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3)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표 3-4]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주요 추진과제(계속)

전략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1)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2)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 교재 개발 (3)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운영체계 마련 (4)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1) 순회교육의 내실화 및 순회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연계 강화 (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실질화 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2) 장애인 진료 활성화 3)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1) 저상버스 확대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7. 자기결정권 보장	1) 성년후견제 내실화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Ⅲ. 차별시정 및 예방강화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2. 장애인권센터 설치		1)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3. 장애인인권교육 강화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4)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 강화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1)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3)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4)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5)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1)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3)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매뉴얼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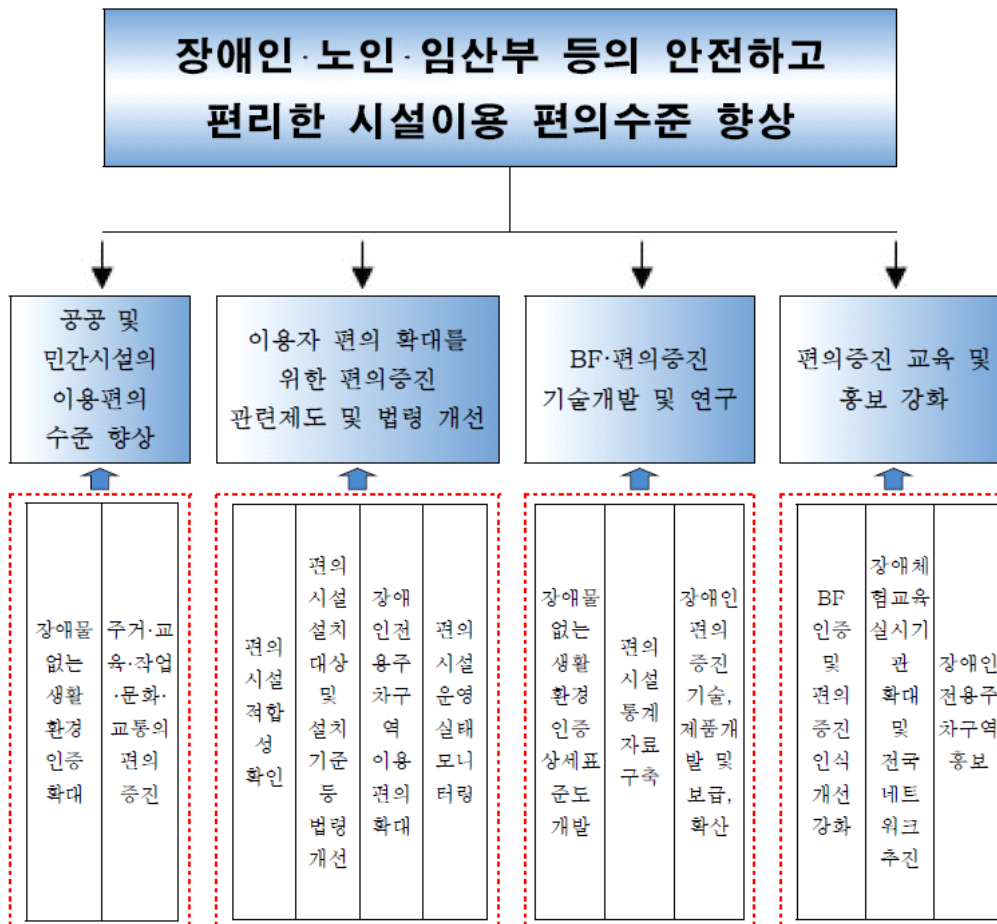
[표 3-4]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주요 추진과제(계속)

전략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IV.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1)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2)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3)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 (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통합보육 활성화 (3)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1) 지원대상 확대 (2)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개선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강화

3)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2015~201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00년부터 5년마다 종합적인 편의증진정책을 수립·시행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함.

[그림 3-1]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표 3-5]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표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 공공 및 민간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BF 인증 의무 취득(연평균 1,184건) - 민간시설의 BF 인증 자발적 참여 유도확대 : 92건('14)→200건('19)
1-2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추진 - 장애인 가구에 대해 저금리 용자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분양·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 공공 분양·임대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무상지원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 추진 (연평균 1,000가구) - 주택 구입·전세자금 용자 시 주택기금으로 우대금리(0.2%p) 적용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 (수도권 5%→8%, 지방 3%→5%)
1-3 교육환경의 편의증진	-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매년 실시 - 교육시설별·장애유형별 인적서비스 제공 확대 · 특수교육 보조인력 : 매년 10,000여명 · 보조공학기기 지원학생 : 매년 6,000여명
1-4 작업환경의 편의증진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의무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점검 및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20회, 1,191개소('15~'19) -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 500개소, 75억('15~'19) - 편의시설 설치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1-5 문화시설의 편의증진	- 점자도서, 녹음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 - 낮밤이조절책상 등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 문화 접근권 강화	- 점자도서, 점자악보 등 지원 : 23,750종, 107억원('15~'19) - 독서보조기기 지원 : 105개소, 10억('15~'19) - 상영관 실태조사 등 용역사업 추진 ('15~'19) -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영화 제작지원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
1-6 교통이용의 편의증진	-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 -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지원	- 저상버스 도입 확충 3,693대, 1,814억 -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2,785대 도입 완료 ('16) - 수도권 전철·고속철도·일반철도역 등에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 -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 25개소, 24억('15~'19)
2-1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편의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 점검	- 시설주관기관별 건축 인·허가 실적과 적합성 대행기관의 적합성 확인 이행실태 점검 : 매년 약 50,000건

[표 3-5]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추진과제별 목표(계속)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표
2-2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법령 개선	- 장애인 등 시설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 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편의증진법 개정('16~'19)
2-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확대	-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개선 및 표지부정 사용 근절	-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 : 매년 2회, 10,000개소 -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및 교통관련 공무원 단속권 법적근거 마련('15) - 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 한('15) - 단속공무원용 앱 개발('16) - 위·변조 사용 방지 등을 위한 주차표지 개선 이행시기 마련('17)
2-4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확대	-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실시 : 매년 2회, 10,000개소('15~'19)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 - 시설물 접근·이용 및 휠체어·보청기 등 보 조기기 제공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미설 치·미제공에 대한 이행개선 상담('16)
3-1 BF 상세표준도 등 기술 및 연구개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 - 시설이용자의 행태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 건축물, 공원, 교통시설, 지역, 도로 BF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 -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및 보도 편의시설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16)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등
3-2 통계자료 구축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공('15년~) -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16~'19년)와 장 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반영 ('19년)
3-3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기술개발 - 과태료 전산화 시스템	- 우수 아이디어를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 - 과태료 전산화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16) 사업효율성 평가, 분석

[표 3-5]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추진과제별 목표(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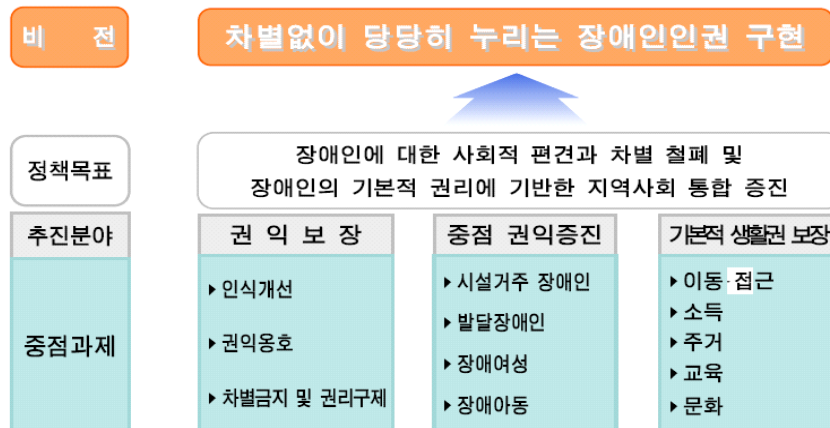
추진과제	세부계획	목표
4-1 BF 인증 및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확대 - 편의증진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홍보 - BF 인증 제도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 보수교육 시 「편의증진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 포함 추진 - 대학교 「편의증진 교육」과 관련된 특강 프로그램(세미나 등) 추진 - 시설주 및 건축관련 종사자까지 확대 실시('15~)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시 편의시설 등에 대한 교육 포함 추진 -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정책교류 활성화 - '찾아가는 세미나' 확대 실시 : 6회('19) - BF 인증 사례집 편찬, 우수사례 공표 및 공모전 개최 추진('17년)
4-2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 및 전국 네트워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단계적 확대 : 250곳('19) - 운영기관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내용 표준화 및 연구개발 진행
4-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애인단체 협조하에 홍보물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 목적으로 매년 합동점검시 안내문 및 보도자료를 반사회보, 공동주택 게시판 및 각 단체 소식지 등에 게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관련 홍보 추진

2.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2013~2017)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은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됨.
- ‘차별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을 정책목표로 3대 추진 분야,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그림 3-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표 3-6]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세부 사업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부 사업명	구분
1. 장애인 권익보장 (11)	1. 인식개선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확대·강화
		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신규
		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신규
		4.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전개	신규
	2. 권익옹호	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신규
		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신규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인권현장	신규
		4.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신규
	3.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신규
		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신규
		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확대·강화

[표 3-6]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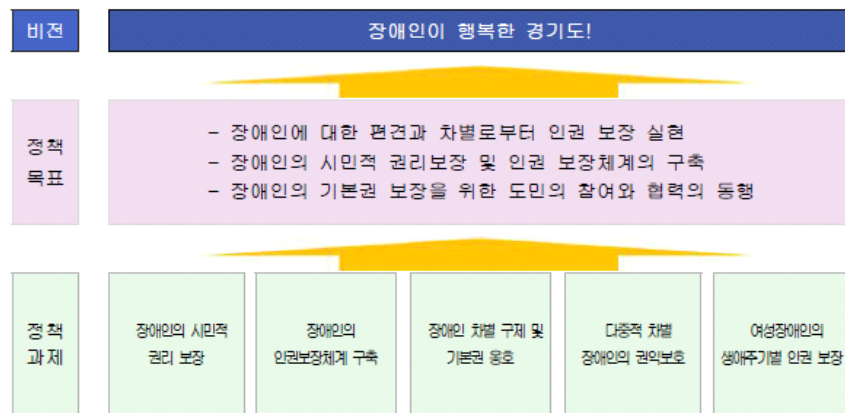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부 사업명	구분	
2. 장애인 권익증진 (17)	1. 시설거주 장애인	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신규	
		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확대·강화	
		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확대·강화	
2. 장애인 권익증진 (17)	2. 발달장애인	1.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확대·강화	
		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확대·강화	
		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확대·강화	
		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확대·강화	
		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확대·강화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확대·강화	
	3. 장애여성	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강화	
		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확대·강화	
		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신규	
		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신규	
	4. 장애아동	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신규	
		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확대·강화	
		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신규	
		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강화	
	3. 기본적 생활권 보장 (20)	1. 이동·접근	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신규
			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확대·강화
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확대·강화	
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신규	
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확대·강화	
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확대·강화	
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확대·강화	
2. 소 득		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확대·강화	
		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신규	
		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신규	
3. 주 거		1.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확대·강화	
		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확대·강화	
		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확대·강화	
		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신규	
4. 교 육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강화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확대·강화	
		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확대·강화	
5. 문 화		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신규	
		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확대·강화	
		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신규	

- 자료 : 서울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3~2017)

-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됨.
-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인권 보장 실현,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보장 및 인권 보장체계의 구축,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의 동행을 3대 정책목표로 5대 정책과제, 25개 기본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표 3-7]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총괄

정책과제	기본과제	세부계획
I.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지원	저상마을버스 운행
		저상마을버스와 광역 시외버스 연계망 구축
		버스정류장의 장애인 이용편의시설 실태조사
	2.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시대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 내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서비스 지원
		장애학생지원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지원
	3.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보장과 정보접근권의 보장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확대
		도·시·군·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보급 확대
		정보접근지원팀 운영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제공확대
	4. 고용·노동권의 보장 및 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민간기업 장애인 근로환경과 차별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표 3-7]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총괄(계속)

정책과제	기본과제	세부계획
I.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	5. 의료보장성 건강권 보장	건강검진 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권 접근성 확보
		장애유형별 건강 메뉴얼 개발·보급 및 건강교육
		장애인의 진료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운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6. 장애인의 정책 참여권리 확대	장애인용 선거 관련 홍보물 실태조사
		장애인 전용 투표소 설치 및 편의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실태조사
II. 장애인 인권중심 전달체계 구축	1. 장애인 인권보장 전담팀(부서) 설치·운영	장애인복지과 내 장애인 인권팀 설치·운영
		시·군청 장애인 관련부서 내 장애인인권 전담팀(전담자) 설치 권고 및 지원
	2.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지표개발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경기도 장애인인권 정보 관리체계 구축
		차별·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체계의 일원화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를 위한 지역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인권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MOU)
	5. 장애인 인권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차별과 인권침해 개입 및 시정조치 전담기구 설치
장애인시설 내 서비스 선택권 보장 및 인권지킴이단 활성화		
III. 장애인 차별구제 및 기본권 옹호	1. 차별사례 시정 및 구제	장애인 긴급구호조치체계 운영
		장애인 법률구조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인권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	장애인 차별 사례를 통한 법률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성년후견지원제도의 정착과 기반조성, 연차별 시행 확대
	3.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의사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장애인 시설종사자 인권지침 매뉴얼 개발
		장애인 인권보장 직무교육 과정 연수시간의 확대
	4.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종사자 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인식개선교육
	5.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 캠페인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이용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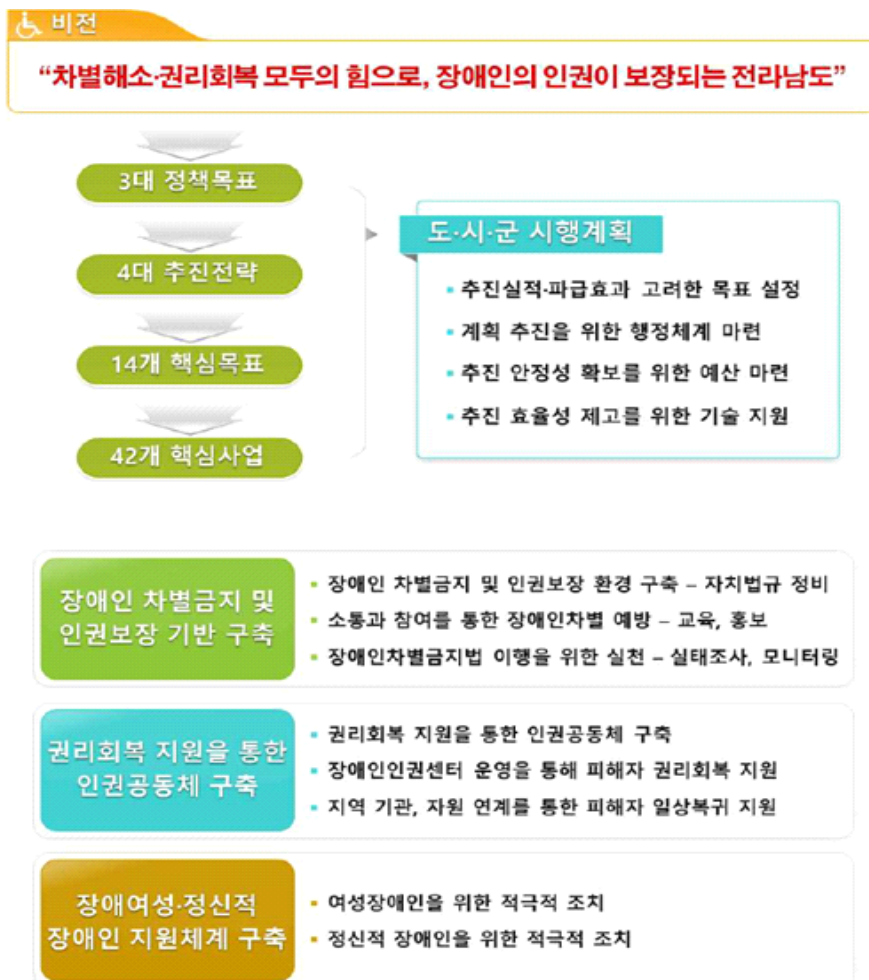
[표 3-7]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 총괄(계속)

정책과제	기본과제	세부계획
IV. 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익보호	1.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의 권익보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인 사례관리 모델 개발, 가족지원
	2.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 가정에 대한 양육도우미 제도 시행
		장애아동 편의 및 차별시정 알림방 구축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과 권익보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기능개편 및 확대
		직장 내 정신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실시 권고
	4.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자립의사존중 강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보급·확대
		탈시설화와 자립의사존중 지원-업적평가제
	5.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	정신장애인 복지카드 제도의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V.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인권보장	1. 장애인 임신부의 출산권 보호	장애인 임신부의 산전·산후관리
		장애인 임신부의 의료적 지원
		장애인 산모의 산후관리 특별 프로그램 시행권고
	2. 여성 장애인 모성권 보호	장애유형별 양육도우미 지원기준과 배치
		여성장애인 양육 및 부모역할 훈련 지원
		여성장애인 부모교육 및 가족교육 시행
	3.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에 대한 보호 및 조치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보호체계 개선
4.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상담 및 구직 멘토제 시행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	

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6~2020)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됨.
- ‘차별해소·권리회복 모두의 힘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전라남도’를 비전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 권리회복 지원을 통한 인권공동체 구축, 장애여성·정신적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의 3대 정책목표와 4대 추진전략, 14개 핵심목표, 42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됨.
- 계획에는 제1차 기본계획(2011~2016) 평가를 통해 본 의의와 과제도 함께 제시되어 있음.

[그림 3-4]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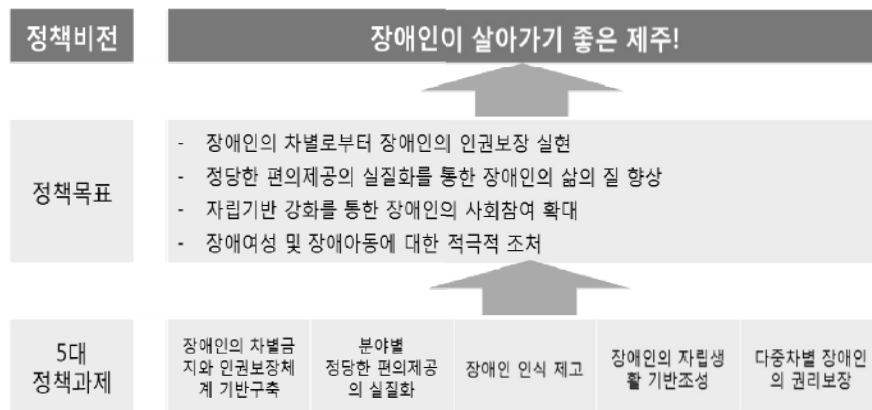
[표 3-8]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핵심사업

추진전략	핵심목표	핵심사업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환경 구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자치법규상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정 장애인 자치법규 확충 및 지역 간 불균형 개선			
	장애인 자치법규 실효적 이행 추진	장애인 자치법규 이행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지표 개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평가 강화 연차별 기본계획 이행 평가 보고서 발간			
	장애인 권리회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권리회복 지원을 위한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2.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 예방	장애인 인권교육 확대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 교육기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 초·중·고 학생 장애인 인권교육 교통사업자(특별교통수단 포함) 장애인 인권교육 건축·토목 사업자 및 전문가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 인권교육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인권교육 확대 도민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홍보 및 정보제공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도·시·군 웹사이트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용 배너 게시 기관 소식지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게재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실천	고용·교육,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고용·노동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교육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금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설·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시설물 이용 강화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법정대수 확보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대수 확보 및 운행 지역 확대
		정보접근,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교통안내시스템 운영 확대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장애인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시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체육시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사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의료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IV. 장애여성·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장애인 성폭력 상담 및 대응 체계 확충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육아 지원체계 마련 관련 위원회 여성장애인 참여율 제고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교육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6~2020)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됨.
- 제주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제주'를 정책 비전으로 장애인의 차별로부터 장애인의 인권보장 실현,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질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정책목표로 하여 5대 정책과제 범주별 총 3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구성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5대 정책과제	중분류	세부 추진과제(안)
I.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기반 구축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장애인차별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영역의 지도감도 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학대장애인 긴급구호조치체계(쉼터 등) 운영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신설
II. 분야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질화	참정권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접근성
	편의시설·이동권	장애인권리기반의 교통환경 조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위한 특별운송차량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축진단 확대 운영과 편의시설 실태조사
		공공기관 건축물 안내시설 확충
무장애환경 인증제 확대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계속)

5대 정책과제	중분류	세부 추진과제(안)
Ⅱ. 분야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질화	장애인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한 접근성 강화	장애인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한 접근성 강화
	의료	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장애인 국가건강검진 확대
		장애인단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강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강화	
Ⅲ. 장애인 인식 제고	인권교육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Ⅳ.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	생활안정지원-소득 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대
		근로장려금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
	주거지원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 지원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비용 지원 확대
	자립	탈시설 위한 체험홈 등소규모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보장
	직업재활과 고용	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직업체험교실 운영		
Ⅴ. 다중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 (여성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3. 시사점

(1) 중앙정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 중앙정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각각 법적 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장애인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며, 장애인 인권 중장기계획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차별의 시정, 예방에 대한 정책들로 구성됨.
-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 이용 및 이동 등의 편의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음.
-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정책

-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됨.
-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실현,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4차 장애인 종합계획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중 일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의 중앙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이 필요한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는 하지만,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계획이며, 변화하는 장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계획으로 보여짐.

IV. 경상북도 장애인 및 장애인 차별 현황

제4장 경상북도 장애인 및 장애인 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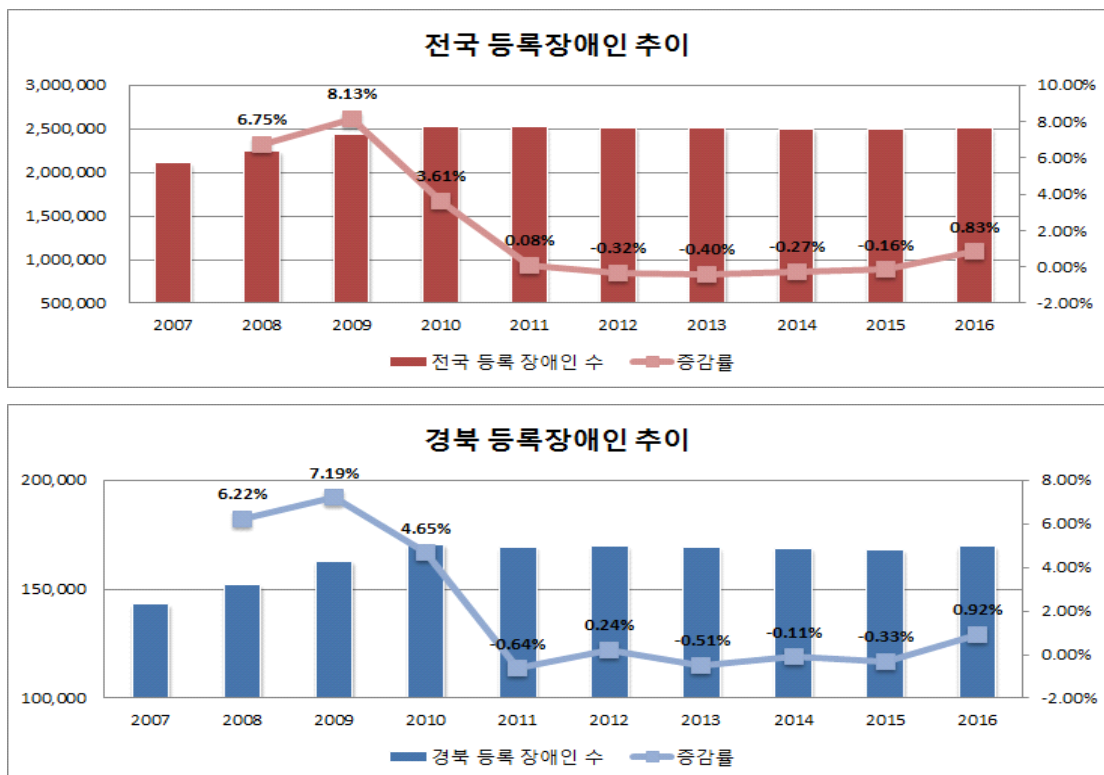
1. 경상북도 장애인 현황

1) 등록장애인 현황

(1) 전국 및 경북 등록장애인 추이

- 전국 시도별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장애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전국 및 경북의 등록장애인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전국과 경북의 등록장애인 증가추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6.09%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점차 감소, 2016년에는 전국과 경북이 각각 0.83%와 0.92%의 증가율이 나타남.
- 2016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전국 2,511,051명, 경북 169,64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각각 19.30%, 18.62% 이상이 장애 등록을 함..

[그림 4-1] 전국 및 경북 등록장애인 추이(2006~2016)



[표 4-1] 전국 및 경북 등록장애인 추이(2006~2016)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경북	143,009	151,898	162,818	170,396	169,300	169,699	168,836	168,650	168,089	169,643
포항	22,474	24,041	25,570	26,100	26,080	26,092	25,876	25,799	25,741	25,820
경주	13,824	13,305	15,654	16,100	16,051	15,912	15,802	15,746	15,639	15,707
김천	8,739	9,411	10,013	10,335	10,387	10,357	10,260	10,298	10,407	10,622
안동	11,886	12,608	13,527	13,989	13,961	13,887	13,788	13,681	13,640	13,737
구미	12,006	12,879	13,862	14,510	14,685	14,751	14,894	14,950	14,982	15,212
영주	6,818	7,342	7,890	8,158	8,256	8,202	8,215	8,157	8,113	8,134
영천	6,339	6,654	7,252	7,465	7,528	7,424	7,383	7,393	7,341	7,461
상주	7,109	7,626	8,303	8,541	8,560	8,546	8,483	8,537	8,512	8,703
문경	5,390	5,801	6,253	6,444	6,372	6,293	6,210	6,203	6,177	6,320
경산	10,449	11,225	12,233	12,718	12,845	12,861	12,955	13,090	13,161	13,273
군위	1,824	1,970	2,129	2,200	2,211	2,156	2,195	2,198	2,184	2,203
의성	4,790	5,148	5,656	5,830	5,775	5,722	5,633	5,609	5,553	5,663
청송	2,176	2,325	2,604	2,730	2,754	2,756	2,699	2,699	2,620	2,613
영양	1,530	1,656	1,828	1,889	1,890	1,890	1,887	1,886	1,850	1,856
영덕	3,374	3,582	3,874	3,940	3,875	3,850	3,831	3,745	3,714	3,719
청도	3,122	3,368	3,691	3,877	3,894	3,870	3,839	3,872	3,839	3,897
고령	2,545	2,706	2,849	2,947	2,960	2,926	2,894	2,872	2,824	2,836
성주	3,056	3,292	3,444	3,573	3,539	3,497	3,497	3,486	3,513	3,553
칠곡	4,926	5,468	5,752	6,032	6,003	5,983	5,946	5,910	5,884	5,864
예천	4,047	4,333	4,687	4,892	4,828	4,770	4,691	4,686	4,665	4,731
봉화	2,638	2,833	3,113	3,233	3,179	3,146	3,106	3,117	3,081	3,092
울진	3,491	3,828	4,137	4,290	4,247	4,210	4,174	4,161	4,106	4,088
울릉	456	497	564	603	599	598	578	555	543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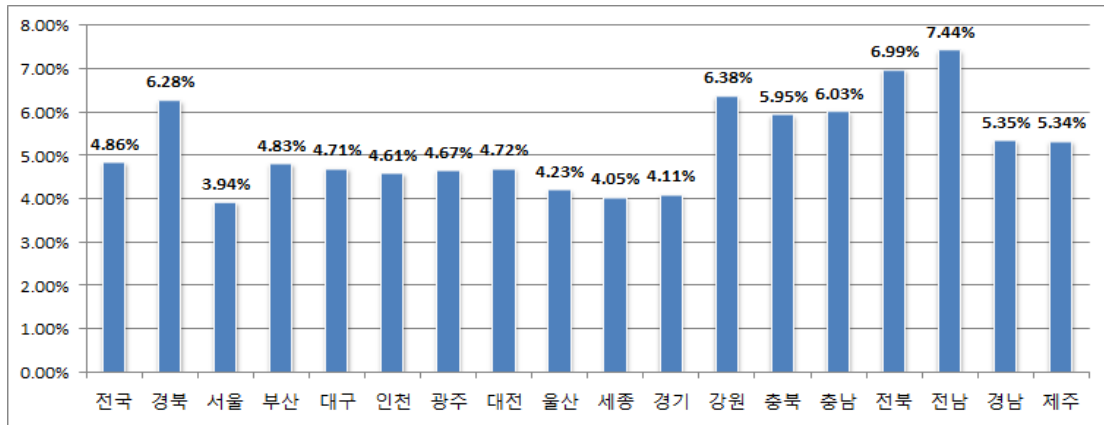
- 자료 : 국가통계포털 및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2)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

(1) 전국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은 4.86% 수준이고, 경북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6.2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시도별로 등록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7.44%, 전북 6.99%, 강원 6.38%의 순이며 경북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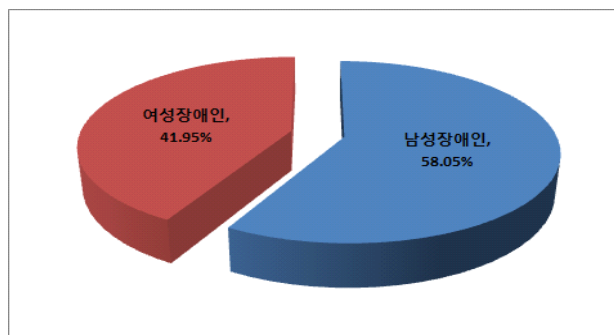
[그림 4-2] 전국 시·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2) 전국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 전국의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58.05%, 여성 41.95%로 남성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음.
- 시도별로 등록장애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울산이 21.46%로 가장 차이가 크고, 전남이 6.65%로 가장 차이가 작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3] 전국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표 4-2] 전국 시·도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시도별 등록장애인			성별 등록장애인			
	전체 인구	장애 인구	장애인구 비율	남성		여성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51,696,216	2,511,051	4.86	1,457,588	58.05	1,053,463	41.95
경북	2,700,398	169,643	6.28	96,293	56.76	73,350	43.24
서울	9,930,616	391,027	3.94	227,271	58.12	163,756	41.88
부산	3,498,529	168,950	4.83	100,326	59.38	68,624	40.62
대구	2,484,557	117,111	4.71	69,090	59.00	48,021	41.00
인천	2,943,069	135,623	4.61	81,961	60.43	53,662	39.57
광주	1,469,214	68,569	4.67	38,538	56.20	30,031	43.80
대전	1,514,370	71,425	4.72	41,767	58.48	29,658	41.52
울산	1,172,304	49,533	4.23	30,082	60.73	19,451	39.27
세종	243,048	9,845	4.05	5,787	58.78	4,058	41.22
경기	12,716,780	522,437	4.11	311,539	59.63	210,898	40.37
강원	1,550,706	98,928	6.38	57,623	58.25	41,305	41.75
충북	1,591,625	94,688	5.95	54,283	57.33	40,405	42.67
충남	2,096,727	126,406	6.03	72,848	57.63	53,558	42.37
전북	1,864,791	130,345	6.99	71,020	54.49	59,325	45.51
전남	1,903,914	141,578	7.44	75,500	53.33	66,078	46.67
경남	3,373,871	180,665	5.35	104,838	58.03	75,827	41.97
제주	641,597	34,278	5.34	18,822	54.91	15,456	4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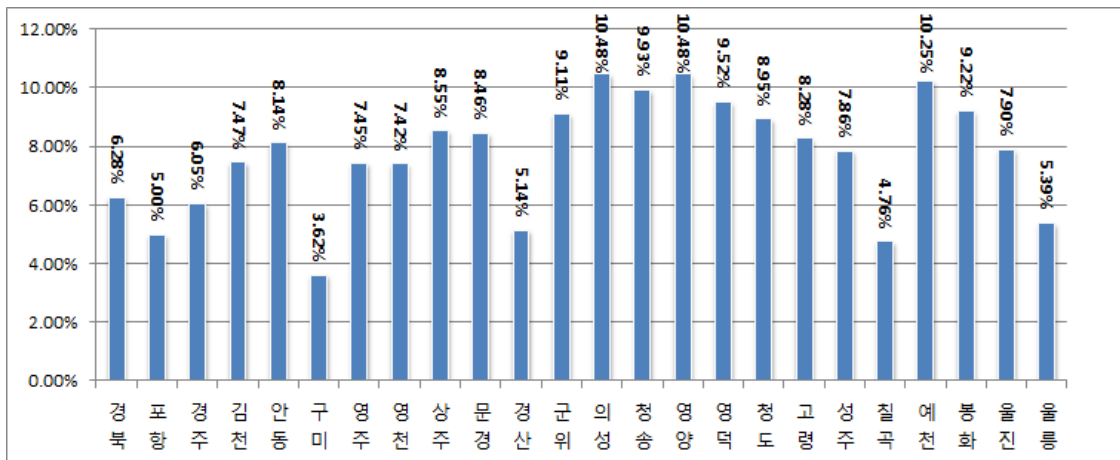
- 자료 : 국가통계포털 및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3) 경북 등록장애인 현황

(1) 경북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

- 2016년 12월 기준, 경북의 총인구는 2,700,398명이며, 이 중 등록장애인구는 169,64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비율은 6.28%로 나타남.
- 시·군별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의성, 영양, 예천이 각각 10.48%, 10.48%, 10.25%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구미, 칠곡은 각각 3.62%, 4.76%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시·군별 장애인 등록현황에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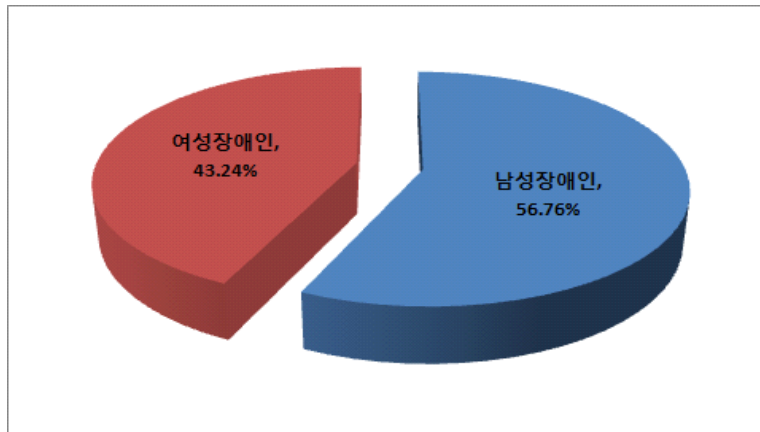
[그림 4-4] 경북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



(2) 경북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 2016년 12월 기준으로 경북의 총 등록장애인 169,643명 중 남성은 96,293명, 여성은 73,350명으로 장애인 성비는 남성 56.76%, 여성 43.24%로 여성장애인보다 남성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시군별로 등록장애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칠곡이 19.26%로 가장 차이가 크고, 청도가 4.13%로 가장 차이가 작음.
 - 성별 차이가 15% 이상인 지역은 칠곡, 경산, 구미, 포항, 경주, 영천, 성주, 고령 등 총 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경북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표 4-3] 경북 시·군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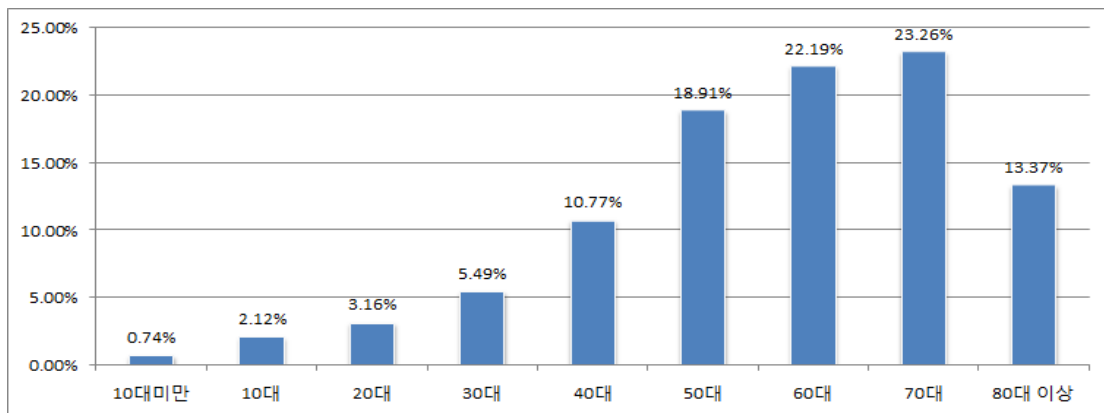
구분	시·군별 등록장애인			성별 등록장애인			
	전체 인구	장애 인구	장애인구 비율	남성		여성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경북	2,700,398	169,643	6.28	96,293	56.76	73,350	43.24
포항	516,775	25,820	5.00	15,180	58.79	10,640	41.21
경주	259,452	15,707	6.05	9,101	57.94	6,606	42.06
김천	142,256	10,622	7.47	5,818	54.77	4,804	45.23
안동	168,798	13,737	8.14	7,560	55.03	6,177	44.97
구미	419,891	15,212	3.62	9,039	59.42	6,173	40.58
영주	109,247	8,134	7.45	4,566	56.13	3,568	43.87
영천	100,521	7,461	7.42	4,318	57.87	3,143	42.13
상주	101,799	8,703	8.55	4,722	54.26	3,981	45.74
문경	74,702	6,320	8.46	3,459	54.73	2,861	45.27
경산	258,037	13,273	5.14	7,915	59.63	5,358	40.37
군위	24,171	2,203	9.11	1,196	54.29	1,007	45.71
의성	54,014	5,663	10.48	3,040	53.68	2,623	46.32
청송	26,301	2,613	9.93	1,425	54.54	1,188	45.46
영양	17,713	1,856	10.48	992	53.45	864	46.55
영덕	39,052	3,719	9.52	1,992	53.56	1,727	46.44
청도	43,564	3,897	8.95	2,029	52.07	1,868	47.93
고령	34,257	2,836	8.28	1,631	57.51	1,205	42.49
성주	45,205	3,553	7.86	2,050	57.70	1,503	42.30
칠곡	123,199	5,864	4.76	3,504	59.75	2,360	40.25
예천	46,166	4,731	10.25	2,513	53.12	2,218	46.88
봉화	33,539	3,092	9.22	1,684	54.46	1,408	45.54
울진	51,738	4,088	7.90	2,251	55.06	1,837	44.94
울릉	10,001	539	5.39	308	57.14	231	42.86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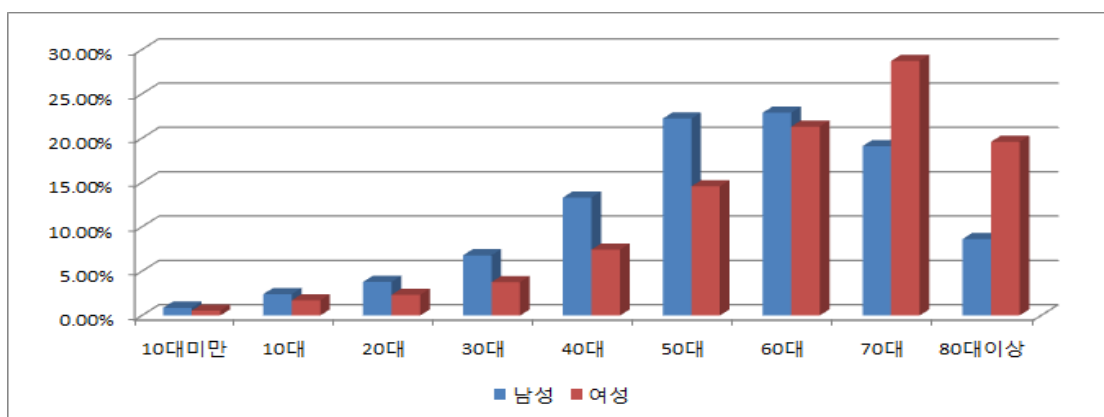
(3)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 경북의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 및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70대가 가장 높은 23.26%의 수준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전체 등록1장애인의 77.73%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며, 이는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한 장애인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60대까지는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7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경북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그림 4-7] 경북 연령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표 4-4] 경북 연령별,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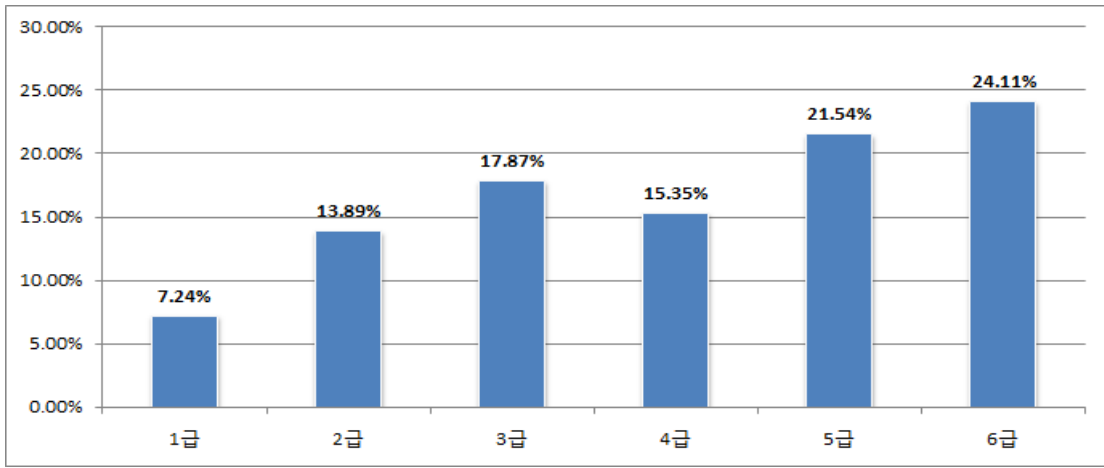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합계	1,256	3,589	5,367	9,309	18,265	32,073	37,646	39,462	22,676	169,643
비율	0.74	2.12	3.16	5.49	10.77	18.91	22.19	23.26	13.37	100.0
남성	846	2,325	3,647	6,541	12,816	21,391	22,018	18,405	8,304	96,293
비율	0.88	2.41	3.79	6.79	13.31	22.21	22.87	19.11	8.62	100.0
여성	410	1,264	1,720	2,768	5,449	10,682	15,628	21,057	14,372	73,350
비율	0.56	1.72	2.34	3.77	7.43	14.56	21.31	28.71	19.59	100.0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4) 경북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 2016년 12월 기준, 경북의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6급이 24.11%(40,907명)으로 가장 많고, 5급 21.54%(36,546명), 3급 17.87%(30,317명), 4급 15.35%(26,032명), 2급 13.89%(23,559명), 1급 7.24%(12,282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4-8] 경북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표 4-5] 경북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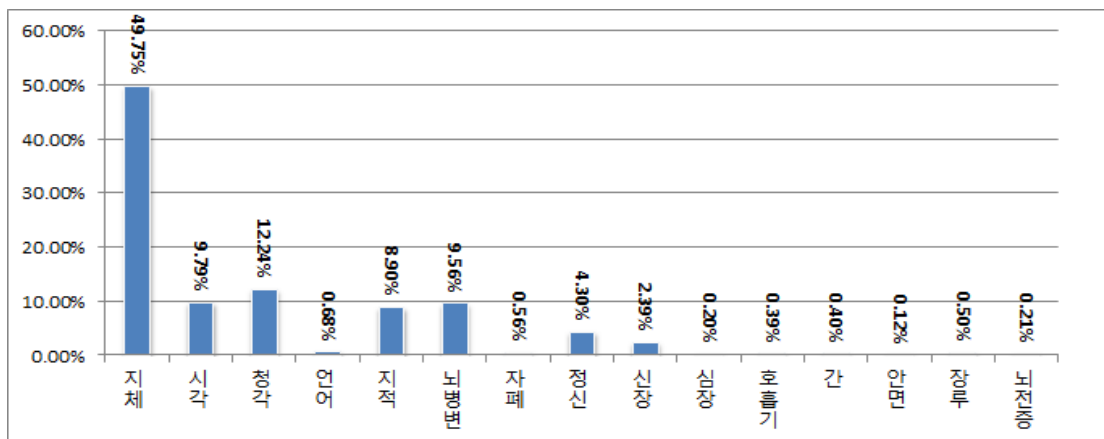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합계	12,282	23,559	30,317	26,032	36,546	40,907	169,643
비율	7.24	13.89	17.87	15.35	21.54	24.11	100.00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5) 경북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 2016년 12월 기준으로 경북의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84,396명(49.75%)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이 20,767명(12.24%), 시각장애인이 16,600명(9.79%), 뇌병변장애인이 16,224명(9.56%), 지적장애인이 15,106명(8.90%)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경북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제4장 경상북도 장애인 및 장애인 차별 현황

[표 4-6] 경북 시·군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합계
합계	84,396	16,600	20,767	1,159	15,106	16,224	956	7,291	4,061	339	664	680	198	850	352	169,643
비율	49.75	9.79	12.24	0.68	8.90	9.56	0.56	4.30	2.39	0.20	0.39	0.40	0.12	0.50	0.21	100.00
포함	13,229	2,677	2,705	198	1,987	2,541	222	943	711	147	104	139	25	122	70	25,820
경주	8,036	1,602	1,969	128	1,187	1,432	66	579	424	29	69	59	19	75	33	15,707
김천	5,107	928	1,490	62	1,001	980	47	591	238	15	38	36	12	61	16	10,622
안동	6,680	1,129	1,718	73	1,384	1,410	70	802	288	13	33	49	17	50	21	13,737
구미	7,214	1,561	1,629	113	1,599	1,521	202	575	514	24	57	79	29	63	32	15,212
영주	4,050	730	960	46	716	858	30	420	165	10	38	37	6	45	23	8,134
영천	3,526	738	942	44	711	733	27	423	176	13	27	19	13	56	13	7,461
상주	4,091	800	1,536	53	739	736	28	416	175	8	37	22	12	39	11	8,703
문경	3,303	718	798	22	463	544	35	193	113	5	45	25	5	37	14	6,320
경산	6,241	1,269	1,441	118	1,591	1,387	93	521	402	14	39	52	11	63	31	13,273
군위	1,161	213	285	12	188	184	13	73	46	1	6	7	2	10	2	2,203
의성	2,884	509	825	43	462	530	12	242	84	7	18	9	3	27	8	5,663
청송	1,394	276	341	13	175	244	3	87	32	6	11	12	2	11	6	2,613
영양	972	167	240	9	166	159	7	71	31	2	6	10	2	11	3	1,856
영덕	1,962	437	428	21	238	348	6	149	62	2	17	9	4	29	7	3,719
청도	2,027	372	476	28	315	325	10	169	97	11	16	15	4	23	9	3,897
고령	1,453	261	335	25	253	309	5	87	56	2	14	13	3	17	3	2,836
성주	1,785	336	429	31	357	324	13	138	82	7	7	18	2	19	5	3,553
칠곡	2,803	597	658	60	559	550	35	348	149	9	25	19	9	27	16	5,864
예천	2,372	459	648	22	405	465	8	177	68	7	32	18	8	34	8	4,731
봉화	1,648	301	398	14	235	260	10	108	63	2	10	15	4	16	8	3,092
울진	2,160	451	457	22	346	331	13	167	76	4	14	16	4	15	12	4,088
울릉	298	69	59	2	29	53	1	12	9	1	1	2	2	0	1	539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4) 경북 장애인 현황 종합

- 경북의 전체인구는 2,700,398명으로 이 중 등록장애인은 6.28%로 169,643명이 등록함.
- 등록장애인은 2013년부터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전국 및 경북 등록장애인이 공통적으로 증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 시군별 등록장애인 비율은 의성, 영양, 예천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구미, 칠곡은 5% 미만으로 나타남.
- 경북 장애인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 56.76%, 여성 43.24%로 전국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 등록장애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23.26%, 60대가 22.19%, 50대가 18.91%순으로 나타나며, 50대 이상 등록장애인이 경북 등록장애인의 77.73%로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남성 장애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 여성노인장애인의 비율이 남성보다 11.36% 높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고령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경북 등록장애인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6급이 24.11%, 5급이 21.54%, 3급이 17.87%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9.75%, 청각장애가 12.24%, 시각장애가 9.79%순으로 나타남.

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 경북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60개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0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개소로 총 86개소임.
- 장애인 거주시설 총 60개소의 입소자는 2,372명, 종사자는 1,428명으로 입소자 1.67명당 종사자 1.67명 수준임.

[표 4-7] 경북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장애인거주시설(86)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자	종사자	시설수	입소자	종사자	시설수	입소자	종사자
합계	60	2,372	1,428	10	134	69	16	61	16
포항	8	246	174	2	22	10	9	26	9
경주	5	163	113	1	18	9	-	-	-
김천	5	105	65	1	10	5	-	-	-
안동	8	481	262	1	10	5	4	19	4
구미	1	33	25	1	28	15	1	4	1
영주	6	167	103	1	10	4	-	-	-
영천	2	92	59	1	10	6	-	-	-
상주	2	60	34	1	20	10	-	-	-
문경	3	49	25	1	6	5	-	-	-
경산	7	541	282	-	-	-	-	-	-
군위	1	30	21	-	-	-	-	-	-
의성	2	49	20	-	-	-	-	-	-
청송	1	30	21	-	-	-	-	-	-
영양	1	30	23	-	-	-	1	9	1
영덕	1	21	15	-	-	-	-	-	-
청도	-	-	-	-	-	-	1	3	1
고령	2	100	68	-	-	-	-	-	-
성주	1	20	12	-	-	-	-	-	-
칠곡	1	30	24	-	-	-	-	-	-
예천	2	95	62	-	-	-	-	-	-
봉화	-	-	-	-	-	-	-	-	-
울진	1	30	20	-	-	-	-	-	-
울릉	-	-	-	-	-	-	-	-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 장애인복지관은 23개 지역 중 16개 지역에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생활이동센터는 총 24개소로 구미 2개소, 나머지 지역에 각 1개소씩 있으며, 수화통역센터는 총 24개소로 포항 2개소, 나머지 지역에 각 1개소씩 있음.

[표 4-8] 경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120)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체육 시설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 통역 센터	점자 도서관	의료 재활 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합계	20	31	4	24	24	1	1	12	2
포항	5	11	-	1	2	1	-	1	-
경주	1	2	1	1	1	-	-	1	1
김천	1	2	-	1	1	-	-	1	-
안동	1	3	1	1	1	-	1	1	-
구미	1	4	1	2	1	-	-	1	-
영주	1	2	-	1	1	-	-	1	-
영천	1	1	-	1	1	-	-	1	-
상주	1	1	1	1	1	-	-	1	-
문경	1	1	-	1	1	-	-	1	-
경산	1	2	-	1	1	-	-	1	1
군위	-	-	-	1	1	-	-	-	-
의성	1	1	-	1	1	-	-	-	-
청송	-	-	-	1	1	-	-	-	-
영양	1	-	-	1	1	-	-	-	-
영덕	-	-	-	1	1	-	-	-	-
청도	1	-	-	1	1	-	-	-	-
고령	-	-	-	1	1	-	-	-	-
성주	-	-	-	1	1	-	-	-	-
칠곡	-	1	-	1	1	-	-	1	-
예천	-	-	-	1	1	-	-	-	-
봉화	1	-	-	1	1	-	-	-	-
울진	1	-	-	1	1	-	-	1	-
울릉	1	-	-	1	1	-	-	-	-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생상품판매시설 현황

- 근로사업장 2개소, 보호작업장 37개소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39개소이며, 생상품판매시설은 총 2개소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총 39개소의 근로장애인은 1,145명, 종사자는 203명으로 근로장애인 4.25명 당 종사자 1명 수준임.

[표 4-9] 경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생상품판매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39)						생상품판매시설(2)	
	근로사업장(2)			보호작업장(37)			시설수	종사자
	시설수	근로장애인	종사자	시설수	근로장애인	종사자		
합계	2	119	28	37	1,026	175	2	9
포항	1	68	16	3	122	19	1*	3
경주	-	-	-	4	98	14	-	-
김천	-	-	-	1	28	6	-	-
안동	1	51	12	5	151	25	1	6
구미	-	-	-	1	32	6	-	-
영주	-	-	-	2	65	12	-	-
영천	-	-	-	1	20	3	-	-
상주	-	-	-	3	96	14	-	-
문경	-	-	-	1	33	4	-	-
경산	-	-	-	2	67	11	-	-
군위	-	-	-	1	21	4	-	-
의성	-	-	-	-	-	-	-	-
청송	-	-	-	1	10	4	-	-
영양	-	-	-	1	26	7	-	-
영덕	-	-	-	1	38	7	-	-
청도	-	-	-	1	36	6	-	-
고령	-	-	-	1	48	7	-	-
성주	-	-	-	1	20	4	-	-
칠곡	-	-	-	2	39	6	-	-
예천	-	-	-	1	25	3	-	-
봉화	-	-	-	1	14	4	-	-
울진	-	-	-	2	37	9	-	-
울릉	-	-	-	-	-	-	-	-

- 참고 : * 장애인생상품판매시설 분점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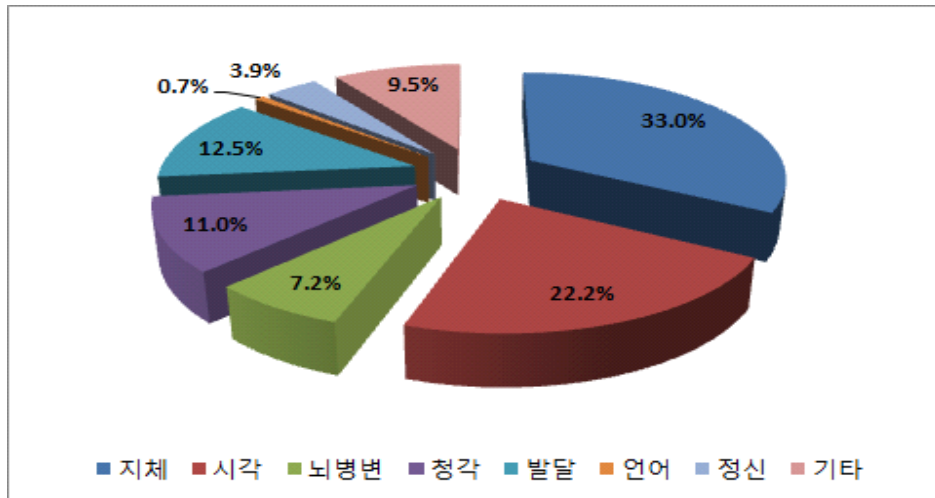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현황

1) 국내 장애인차별 현황

(1)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22.2%, 발달장애인이 12.5%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표 4-10]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 건, %)

구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계	
전체	합계	3,403	2,295	741	1,137	1,290	73	406	976	10,320
	비율	33.0	22.2	7.2	11.0	12.5	0.7	3.9	9.5	100.0
2008	합계	72	85	35	45	29	1	15	303	585
	비율	12.3	14.5	6.0	7.7	4.9	0.2	2.6	51.8	100.0
2009	합계	288	91	69	46	70	11	44	106	725
	비율	39.7	12.6	9.5	6.3	9.7	1.5	6.1	14.6	100.0

[표 4-10]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계속)

(단위 : 건, %)

구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계	
2010	합계	508	427	136	275	181	8	73	87	1,695
	비율	30.0	25.2	8.0	16.2	10.7	0.5	4.3	5.1	100.0
2011	합계	297	142	57	72	214	8	48	48	886
	비율	33.5	16.0	6.5	8.1	24.2	0.9	5.4	5.4	100.0
2012	합계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1339
	비율	36.7	14.4	6.5	10.6	17.3	1.0	3.5	10.0	100.0
2013	합계	380	299	71	251	115	7	50	139	1312
	비율	29.0	22.8	5.4	19.1	8.8	0.5	3.8	10.6	100.0
2014	합계	402	290	92	112	104	13	55	71	1139
	비율	35.3	25.5	8.1	9.9	9.1	1.1	4.8	6.2	100.0
2015	합계	334	440	93	101	100	5	30	43	1146
	비율	29.2	38.4	8.1	8.8	8.7	0.4	2.6	3.8	100.0
2016	합계	629	328	101	93	246	7	44	44	1492
	비율	42.2	21.9	6.8	6.2	16.4	0.5	3.0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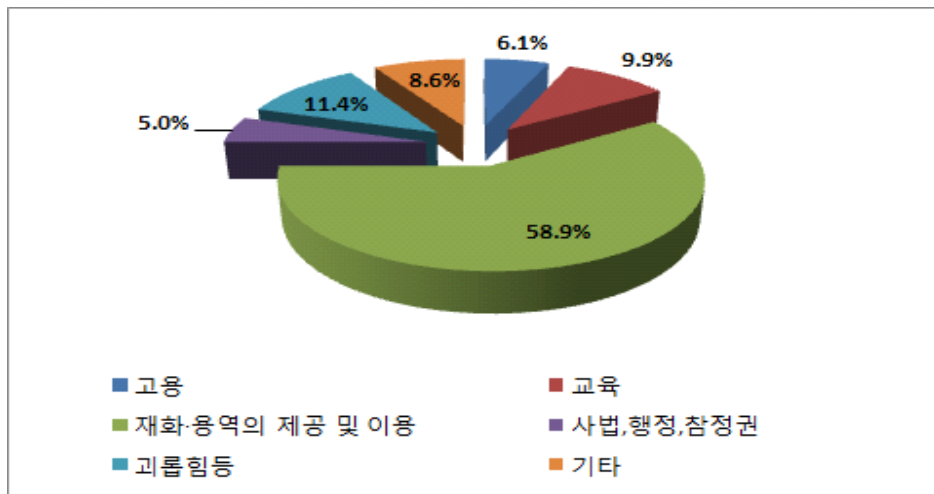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관련된 진정이 58.9%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등과 관련한 진정이 11.4%, 교육과 관련된 진정이 9.9%순으로 나타남.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관련된 진정 중 재화·용역 일반과 정보통신의사소통과 관련된 진정건수가 각각 15.2%, 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1]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표 4-11]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 건, %)

구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 힘등	기타	합계
				재화 용역 일반	보 금 협 회	시설 물 집 근	이 동 교 통 수 단	정 보 통 신 의 사 소 통	문 화 예 술 체 육	소 계				
전체	합계	632	1,025	1,567	675	1,265	701	1,560	313	6,081	521	1,175	886	10,320
	비율	6.1	9.9	15.2	6.5	12.3	6.8	15.1	3.0	58.9	5.0	11.4	8.6	100.0
2008	합계	41	61	37	49	78	128	35	20	347	55	42	39	585
	비율	7.0	10.4	6.3	8.4	13.3	21.9	6.0	3.4	59.3	9.4	7.2	6.7	100.0
2009	합계	69	49	153	91	93	49	13	13	412	42	105	48	725
	비율	9.5	6.8	21.1	12.6	12.8	6.8	1.8	1.8	56.8	5.8	14.5	6.6	100.0

[표 4-11]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계속)

(단위 : 건, %)

구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 힘등	기타	합계	
				재화 용역 일반	보 금 협 용	시설 물 접 근	이 동 교 통 수 단	정 보 통 신 의 사 소 통	문 화 예 술 체 육					소 계
2010	합계	82	55	296	65	263	103	506	36	1,269	39	176	74	1,695
	비율	48	32	175	38	155	61	299	21	749	23	104	44	1000
2011	합계	64	62	179	70	7	67	45	59	487	80	105	88	886
	비율	7.2	7.0	202	7.9	7.6	7.6	5.1	6.7	55.0	9.0	11.9	9.9	1000
2012	합계	82	96	188	153	252	40	42	133	808	93	111	150	1,340
	비율	6.1	7.2	140	11.4	18.8	3.0	3.1	9.9	60.3	6.9	8.3	11.2	1000
2013	합계	75	45	154	55	128	49	307	13	706	71	303	112	1,312
	비율	5.7	3.4	11.7	4.2	9.8	3.7	23.4	1.0	53.8	5.4	23.1	8.5	1000
2014	합계	94	66	180	62	142	108	166	19	677	61	123	118	1,139
	비율	8.3	5.8	15.8	5.4	12.5	9.5	14.6	1.7	59.4	5.4	10.8	10.4	1000
2015	합계	69	55	129	82	125	99	286	12	733	37	121	131	1,146
	비율	6.0	4.8	11.3	7.2	10.9	8.6	25.0	1.0	64.0	3.2	10.6	11.4	1000
2016	합계	56	536	251	48	117	58	160	8	642	43	89	126	1,492
	비율	3.8	35.9	16.8	3.2	7.8	3.9	10.7	0.5	43.0	2.9	6.0	8.4	1000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 경북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 경북 장애인의 인권·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북행복재단에서 조사한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2015)를 참고함.

(1)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97.0%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는 응답이 37.4%,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7.1% 순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시행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57.1%,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32.7%,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0.2%로 나타남.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차별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7.2%,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3%,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남.
- 장애 때문에 차별을 항상 느끼는 경우는 17.2%, 가끔 느끼는 경우는 57.5%로 많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구제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7.9%, 모른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남.
-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는 인권보장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0.0%,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0%로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교육경로를 설문한 결과,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관이 75.1%로 가장 많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11.5%순으로 나타남.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약간 도움 됨이 36.3%, 보통이 31.9%,순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남.

[표 4-1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우리나라에서 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차별이 매우 심함	85	16.0
	차별이 심한 편임	154	29.0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차별이 존재함	276	52.0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음	16	3.0
	합계	531	100.0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대한 인지	알고 있음	197	37.4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름	240	45.5
	전혀 들어본 적 없음	90	17.1
	합계	527	100.0
장애인 차별금지법 내용인식	충분히 알고 있음	32	6.8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37	50.3
	거의 아는 것이 없음	154	32.7
	전혀 알지 못함	48	10.2
	합계	471	100.0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차별이 개선된 정도	크게 개선되었음	23	5.1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	237	52.1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	165	36.3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30	6.6
	합계	455	100.0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항상 느낌	91	17.2
	가끔 느낌	304	57.5
	별로 느끼지 않음	107	20.2
	전혀 느끼지 않음	27	5.1
	합계	529	100.0
국가인권위원 회 진정구제 역할 인지 여부	알고 있음	255	47.9
	모름	277	52.1
	합계	532	100.0
장애인차별금 지법 또는 인권보장 교육 경험	있음	265	50.0
	없음	265	50.0
	합계	530	100.0
교육 경로	학교	9	3.4
	정부 및 관공서	5	1.9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관	196	75.1
	시민단체	10	3.8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	30	11.5
	기타	11	4.2
	합계	261	100.0

[표 4-1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계속)

구분		빈도	비율
교육 도움	전혀 도움 되지 않음	8	3.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7	10.8
	보통	80	31.9
	약간 도움 됨	91	36.3
	많이 도움 됨	45	17.9
	합계	251	100.0
경북의 장애인 인권보장 노력	매우 그러함	42	6.5
	그런 편임	237	41.4
	별로 그렇지 않음	202	37.1
	전혀 그렇지 않음	45	15.0
	합계	526	100.0

(2) 장애인 인권 · 차별의 경험 및 인식

접근권과 이동권

■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 경험

-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 경험 중 편의시설 미비가 61.4%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간 부족 또는 불법 점유 56.1%, 장애인 전용 주차장 미비 53.5%, 대중교통 편의시설 미설치 51.9% 순으로 나타남.

[표 4-13]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 경험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빈도	차별경험 있다
편의시설 미비	빈도	90	78	158	110	436	268
	비율	20.6	17.9	36.2	25.2	100.0	61.4
출입이나 이용 거부 경험	빈도	222	141	88	26	477	114
	비율	46.5	29.6	18.4	5.5	100.0	23.9
장애인 전용 주차장 미비	빈도	87	74	86	99	346	185
	비율	25.1	21.4	24.9	28.6	100.0	53.5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간 부족 또는 불법 점유	빈도	87	72	107	96	362	203
	비율	24.0	19.9	29.6	26.5	100.0	56.1
교통수단 승차거부	빈도	208	142	77	46	473	123
	비율	44.0	30.0	16.3	9.7	100.0	26.0
대중교통 편의시설 미설치	빈도	117	94	120	108	439	228
	비율	26.7	21.4	27.3	24.6	100.0	51.9
안내견, 장애인보조기구의 동반으로 인한 승차거부	빈도	147	82	61	27	317	88
	비율	46.4	25.9	19.2	8.5	100.0	27.7
운전면허시험에서 불이익	빈도	195	74	58	24	351	82
	비율	55.6	21.1	16.5	6.8	100.0	23.3
정보접근 이용상의 차별	빈도	99	93	91	85	368	176
	비율	26.9	25.3	24.7	23.1	100.0	47.8
공공기관 정보접근 상의 차별	빈도	135	120	110	65	430	175
	비율	31.4	27.9	25.6	15.1	100.0	40.7
투표권 행사 과정상의 차별	빈도	156	132	87	45	420	132
	비율	37.1	31.4	20.7	10.7	100.0	31.4
참정권 차별	빈도	154	139	94	47	434	141
	비율	35.5	32.0	21.7	10.8	100.0	32.5

■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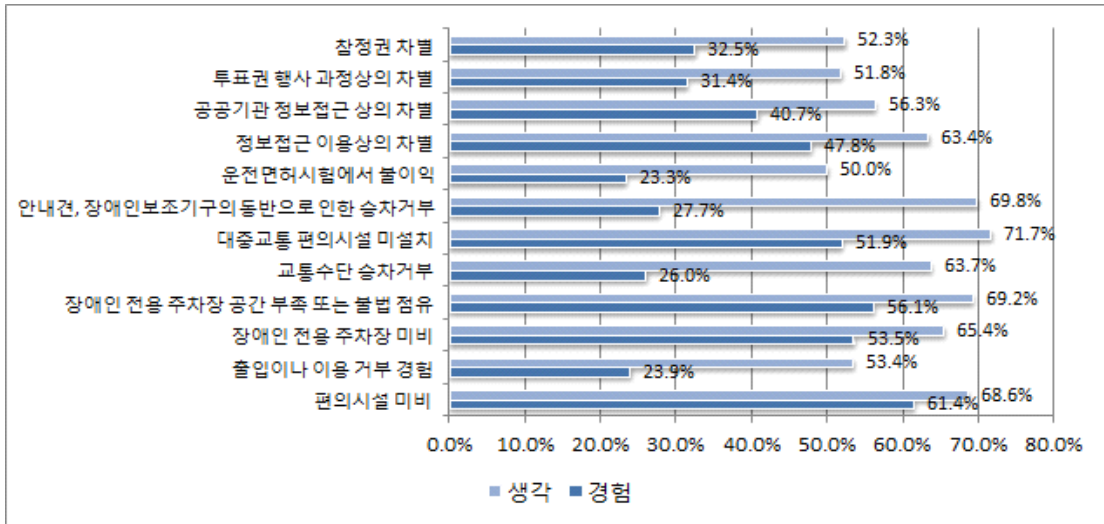
- 대중교통 편의시설 미설치가 71.7%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안내건, 장애인보조기구의 동반으로 인한 승차거부 69.8%,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간 부족 또는 불법 점유 69.2%, 편의시설 미비 68.6%, 장애인 전용 주차장 미비 65.4% 순으로 나타남.

[표 4-14]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빈도	차별경험 있다
편의시설 미비	빈도	61	106	275	8	531	283
	비율	11.5	20.0	51.8	16.8	100.0	68.6
출입이나 이용 거부 경험	빈도	88	159	230	53	530	283
	비율	16.6	30.0	43.4	10.0	100.0	53.4
장애인 전용 주차장 미비	빈도	66	116	267	77	526	344
	비율	12.5	22.1	50.8	14.6	100.0	65.4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간 부족 또는 불법 점유	빈도	61	101	273	91	526	364
	비율	11.6	19.2	51.9	17.3	100.0	69.2
교통수단 승차거부	빈도	65	128	255	84	532	339
	비율	12.2	24.1	47.9	15.8	100.0	63.7
대중교통 편의시설 미설치	빈도	50	100	249	131	530	380
	비율	9.4	18.9	47.0	24.7	100.0	71.7
안내건, 장애인보조기구의 동반으로 인한 승차거부	빈도	63	97	279	91	530	370
	비율	11.9	18.3	52.6	17.2	100.0	69.8
운전면허시험에서 불이익	빈도	109	154	206	57	526	263
	비율	20.7	29.3	39.2	10.8	100.0	50.0
정보접근 이용상의 차별	빈도	67	125	252	81	525	333
	비율	12.8	23.8	48.0	15.4	100.0	63.4
공공기관 정보접근 상의 차별	빈도	81	150	227	70	528	297
	비율	15.3	28.4	43.0	13.3	100.0	56.3
투표권 행사 과정상의 차별	빈도	98	156	217	56	527	273
	비율	18.6	29.6	41.2	10.6	100.0	51.8
참정권 차별	빈도	94	156	207	67	524	274
	비율	17.9	29.8	39.5	12.8	100.0	52.3

-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 경험과 생각에 있어서 편의시설 미비, 장애인 전용 주차장 미비,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간 부족 또는 불법 점유 등 3개 항목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4-12]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경험과 생각 비교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 및 인식

■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

-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 중 원하는 금융상품 가입 시 장애특성 고려한 설명을 받지 못함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경조사 참여 제한, 가족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39.1%, 지역사회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38.6%,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일상생활 제약 37.4% 순으로 나타남.

[표 4-15]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합계	차별경험 있다
자산관리, 주거권 침해 경험	빈도	204	128	74	24	430	98
	비율	47.4	29.8	17.2	5.6	100.0	22.8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일상생활 제약	빈도	142	109	103	47	401	150
	비율	35.4	27.2	25.7	11.7	100.0	37.4
금전관리, 생활용품 구입에 취향 반영 제약	빈도	165	153	101	54	473	155
	비율	34.9	32.3	21.4	11.4	100.0	32.8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 가입 거부	빈도	182	133	109	57	481	166
	비율	37.8	27.7	22.7	11.9	100.0	34.6
원하는 금융상품 가입 시 장애특성 고려한 설명 받지 못함	빈도	133	138	141	63	475	204
	비율	28.0	29.1	29.7	13.3	100.0	43.0
금융대출 시 보증인 추가 요구, 대출액 제한	빈도	172	125	70	35	402	105
	비율	42.8	31.1	17.4	8.7	100.0	26.1
재산상속, 증여(배분)에서의 차별경험	빈도	210	109	54	26	39	80
	비율	52.6	27.3	1.5	6.5	100.0	8.0
동아리 활동, 친구와의 만남, 음주 등에서 부당한 대우, 거부 등의 차별 경험	빈도	182	135	99	58	474	157
	비율	38.4	28.5	20.9	12.2	100.0	33.1
가족 경조사 참여 제한 가족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빈도	189	119	123	75	506	198
	비율	37.4	23.5	24.3	14.8	100.0	39.1
지역사회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빈도	170	141	142	53	506	195
	비율	33.6	27.9	28.1	10.5	100.0	38.6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함	빈도	194	156	99	50	499	149
	비율	38.9	31.3	19.8	10.0	100.0	29.8

■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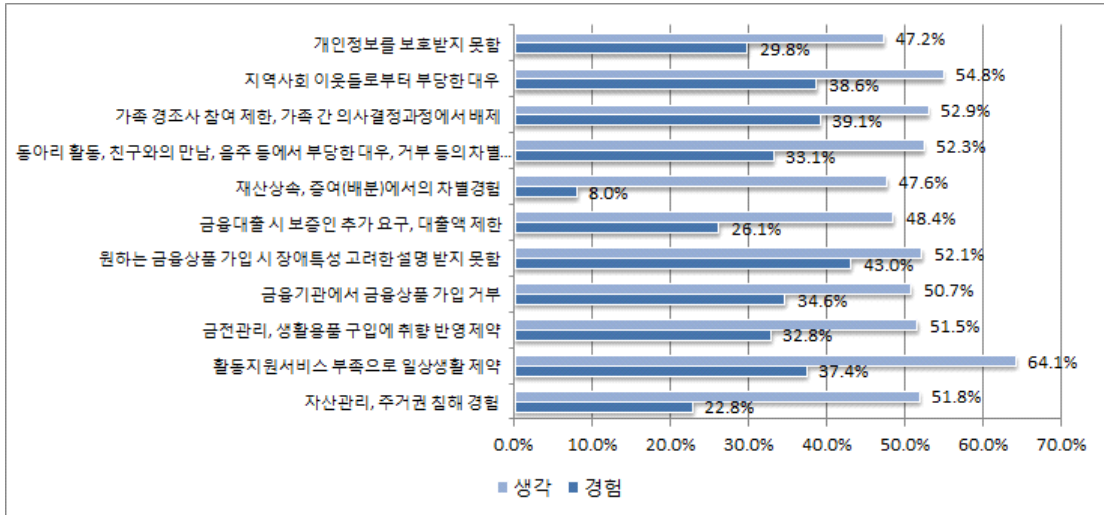
○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일상생활 제약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54.8%, 가족 경조사 참여 제한, 가족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52.9%, 동아리 활동, 친구와의 만남, 음주 등에서 부당한 대우, 거부 등의 차별경험 52.3% 순으로 나타남.

[표 4-16]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차별 있다
자산관리, 주거권 침해 경험	빈도	91	163	218	55	527	273
	비율	17.3	30.9	41.4	10.4	100.0	51.8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일상생활 제약	빈도	68	121	254	84	527	338
	비율	12.9	23.0	48.2	15.9	100.0	64.1
금전관리, 생활용품 구입에 취향 반영 제약	빈도	95	161	207	65	528	272
	비율	18.0	30.5	39.2	12.3	100.0	51.5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 가입 거부	빈도	106	154	199	68	527	267
	비율	20.1	29.2	37.8	12.9	100.0	50.7
원하는 금융상품 가입 시 장애특성 고려한 설명 받지 못함	빈도	102	151	212	63	528	275
	비율	19.3	28.6	40.2	11.9	100.0	52.1
금융대출 시 보증인 추가 요구, 대출액 제한	빈도	115	156	198	57	526	255
	비율	21.9	29.7	37.6	10.8	100.0	48.4
재산상속, 증여(배분)에서의 차별경험	빈도	115	159	183	65	522	248
	비율	22.0	30.5	35.1	12.5	100.0	47.6
동아리 활동, 친구와의 만남, 음주 등에서 부당한 대우, 거부 등의 차별 경험	빈도	103	149	206	70	528	276
	비율	19.5	28.2	39.0	13.3	100.0	52.3
가족 경조사 참여 제한 가족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빈도	103	146	198	82	529	280
	비율	19.5	27.6	37.4	15.5	100.0	52.9
지역사회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빈도	81	158	212	78	529	290
	비율	15.3	29.9	40.1	14.7	100.0	54.8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함	빈도	106	172	183	66	527	249
	비율	20.1	32.6	34.7	12.5	100.0	47.2

-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 및 생각에 있어서 가족 경조사 참여 제한, 가족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지역사회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일상생활 제약 등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4-13] 자립생활권(생활관련)·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과 생각 비교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 경험 및 인식

■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 경험

- 의료기관 진료 거부, 의료기구 미비로 인한 진료제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배제가 40.4%,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장치 설치 미비 35.8%로 나타남.

[표 4-17]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 경험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합계	차별경험 있다
의료기관 진료 거부, 의료기구 미비로 인한 진료 제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배제	빈도	170	131	139	65	505	204
	비율	33.7	25.9	27.5	12.9	100.0	40.4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장치 설치 미비	빈도	176	118	106	58	458	164
	비율	38.4	25.8	23.1	12.7	100.0	35.8

■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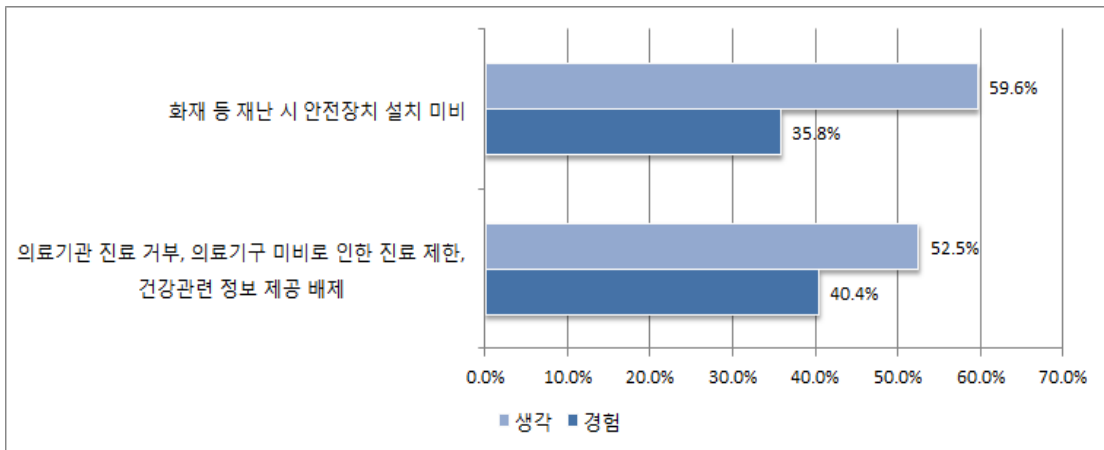
-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장치 설치 미비 59.6%, 의료기관 진료 거부, 의료기구 미비로 인한 진료 제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배제 52.5%로 나타남.

[표 4-18]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차별 있다
의료기관 진료 거부, 의료기구 미비로 인한 진료 제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배제	빈도	100	150	210	67	527	277
	비율	19.0	28.5	39.8	12.7	100.0	52.5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장치 설치 미비	빈도	96	116	221	92	525	313
	비율	18.3	22.1	42.1	17.5	100.0	59.6

-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 경험에서는 의료기관 진료 거부, 의료기구 미비로 인한 진료 제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배제가 높게 나타났고, 차별에 대한 생각에서는 화재 등 재난 시 안전장치 설치 미비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4] 건강권·안전권 관련 차별 경험과 생각 비교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 및 인식

■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

-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 중 채용 거부, 부당 해고 등 차별경험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성적 저하나 불합격 경험이 34.5%, 직무배치 시 편의시설 작업설비 개선, 작업 공간을 확보 받지 못하는 차별 경험이 32.4%로 나타남.

[표 4-19]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합계	차별경험 있다
급여, 승진,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	빈도	133	107	74	41	355	115
	비율	37.5	30.1	20.8	11.5	100.0	32.3
채용 거부, 부당 해고 등 차별경험	빈도	131	75	98	55	359	153
	비율	36.5	20.9	27.3	15.3	100.0	42.6
연수, 야유회 등 행사참여에 제한이나 거부	빈도	138	117	78	29	362	107
	비율	38.1	32.3	21.5	8.0	100.0	29.5
취업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성적 저하나 불합격 경험	빈도	134	82	77	37	330	114
	비율	40.6	24.8	23.3	11.2	100.0	34.5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검사 요구	빈도	160	104	63	24	351	87
	비율	45.6	29.6	17.9	6.8	100.0	24.7
직무배치 시 편의시설 작업설비 개선 작업 공간 확보 받지 못하는 차별경험	빈도	139	102	81	34	356	115
	비율	39.0	28.7	22.8	9.6	100.0	32.4

■ 노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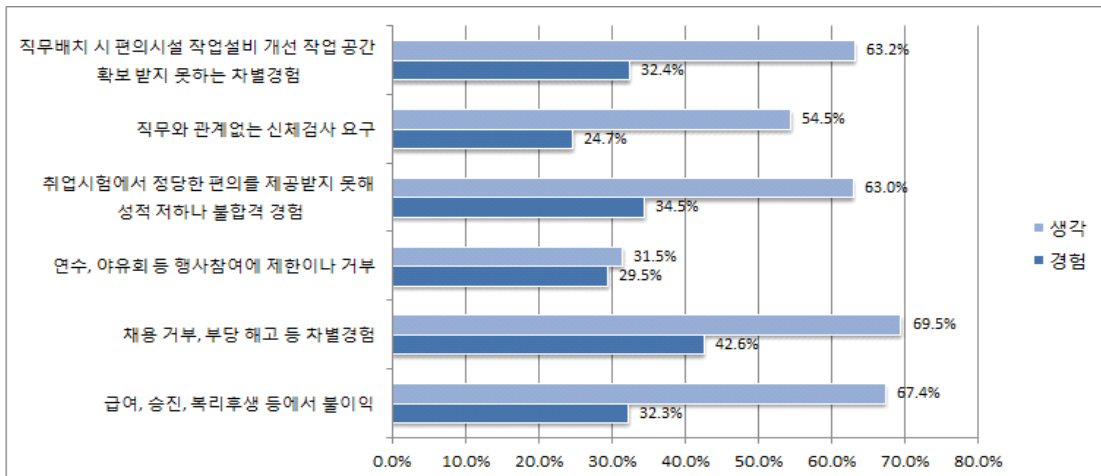
- 채용 거부, 부당 해고 등 차별 경험이 69.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급여, 승진,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이 67.4%, 직무배치 시 작업설비 개선, 작업공간 확보 받지 못하는 차별 경험이 63.2%로 나타남.

[표 4-20] 노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차별 있다
급여, 승진,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	빈도	81	90	263	91	525	354
	비율	15.4	17.1	50.1	17.3	100.0	67.4
채용 거부, 부당 해고 등 차별경험	빈도	75	85	258	107	525	365
	비율	14.3	16.2	49.1	20.4	100.0	69.5
연수, 야유회 등 행사참여에 제한이나 거부	빈도	83	119	241	82	525	323
	비율	15.8	22.7	45.9	15.6	100.0	31.5
취업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성적 저하나 불합격 경험	빈도	77	117	244	86	524	330
	비율	14.7	22.3	46.6	16.4	100.0	63.0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검사 요구	빈도	86	152	203	82	523	285
	비율	16.4	29.1	38.8	15.7	100.0	54.5
직무배치 시 편의시설 작업설비 개선 작업 공간 확보 받지 못하는 차별경험	빈도	80	112	245	86	523	331
	비율	15.3	21.4	46.8	16.4	100.0	63.2

○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과 생각에 있어서 채용 거부, 부당 해고 등의 차별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남.

[그림 4-15]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과 생각 비교



문화권 관련 차별 경험 및 인식

■ 문화권 관련 차별 경험

- 문화권 관련 차별 경험 중 보조인력, 지도자가 제공되지 않아 문화 및 체육활동 참여에 제한이 4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대중문화이용시설 및 관광지, 휴게소, 숙박 이용의 차별이 각각 46.2%, 45.1%로 나타남.

[표 4-21] 문화권 관련 차별 경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차별 있다
대중매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언어적·물리적 폭력행위에 노출	빈도	170	133	129	49	481	178
	비율	35.3	27.7	26.8	10.2	100.0	37.0
상품 포장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현 조장	빈도	181	175	115	23	494	138
	비율	36.6	35.4	23.3	4.7	100.0	28.0
편의시설 미비(엘리베이터 문턱 등)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대중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차별 경험	빈도	129	120	129	76	454	205
	비율	28.4	26.4	28.4	16.7	100.0	45.1
대중문화시설 이용 시 부당한 대우, 이용·숙박 거부	빈도	171	180	100	51	502	151
	비율	34.1	35.9	19.9	10.2	100.0	30.1
편의시설 미비(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엘리베이터 등)로 관광지, 휴게소, 숙박 이용 등에 있어 차별 경험	빈도	133	120	126	66	445	192
	비율	29.9	27.0	28.3	14.8	100.0	43.1
보조인력, 지도자가 제공되지 않아 문화 및 체육활동 참여에 제한	빈도	123	135	149	75	482	224
	비율	25.5	28.0	30.9	15.3	100.0	46.2
보조도구(예. 한국영화 자막 제시)가 제공되지 않아 문화활동 참여에 제한	빈도	120	133	102	85	440	187
	비율	27.3	30.2	23.2	19.3	100.0	42.5

■ 문화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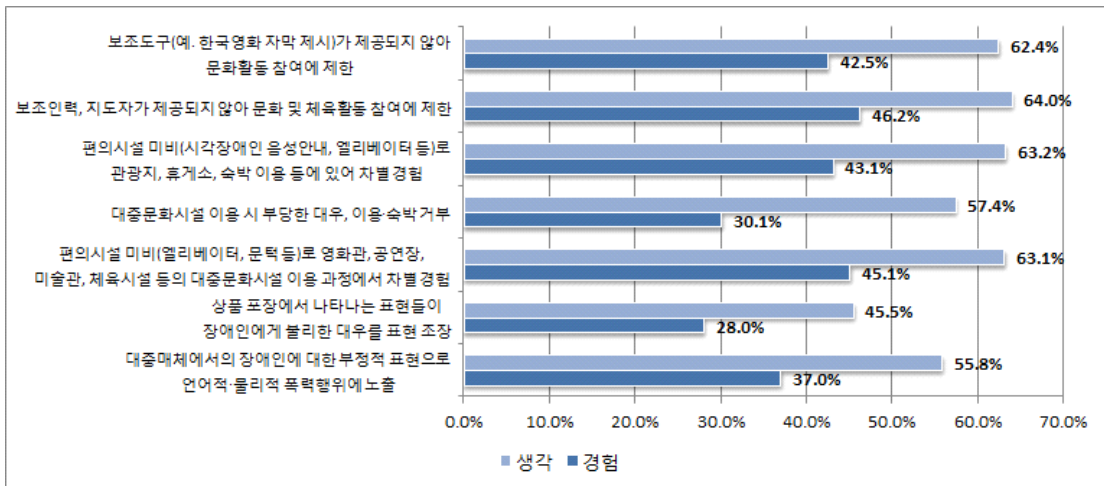
- 보조인력, 지도자가 제공되지 않아 문화 및 체육활동 참여에 제한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관광지, 휴게소, 숙박 이용 및 대중문화시설 이용의 차별이 각각 63.2%, 63.1%로 나타남.

[표 4-22] 문화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차별 있다
대중매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언어적·물리적 폭력행위에 노출	빈도	86	148	230	65	529	295
	비율	16.3	28.0	43.5	12.3	100.0	55.8
상품 포장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현 조장	빈도	109	178	197	42	526	239
	비율	20.7	33.8	37.5	8.0	100.0	45.5
편의시설 미비(엘리베이터 문턱 등)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대중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차별 경험	빈도	71	123	240	92	526	332
	비율	13.5	23.4	45.6	17.5	100.0	63.1
대중문화시설 이용 시 부당한 대우, 이용·숙박 거부	빈도	79	145	234	67	525	301
	비율	15.0	27.6	44.6	12.8	100.0	57.4
편의시설 미비(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엘리베이터 등)로 관광지 휴게소 숙박 이용 등에 있어 차별 경험	빈도	67	127	252	81	527	333
	비율	12.7	24.1	47.8	15.4	100.0	63.2
보조인력, 지도자가 제공되지 않아 문화 및 체육활동 참여에 제한	빈도	69	120	257	79	525	336
	비율	13.1	22.9	49.0	15.0	100.0	64.0
보조도구(예. 한국영화 자막 제시)가 제공되지 않아 문화활동 참여에 제한	빈도	73	125	217	111	526	328
	비율	13.9	23.8	41.3	21.1	100.0	62.4

- 문화권 관련 차별에 대한 경험과 생각에 있어서 보조인력, 지도자가 제공되지 않아 문화 및 체육활동 참여에 제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관광지, 휴게소, 숙박 이용 및 대중문화시설 이용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4-16] 문화권 관련 차별 경험과 생각 비교



법적권리 관련 차별 경험 및 인식

■ 법적권리 관련 차별 경험

- 법적권리 관련 차별 경험 중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을 도와줄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별 경험이 2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행정 및 사업관련 종사자가 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을 처리하여 피해당한 경험이 22.6%로 나타남.

[표 4-23] 법적 권리 관련 차별 경험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합계	차별경험 있다
행정 및 사업관련 종사자가 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을 처리하여 피해당한 경험	빈도	223	125	78	24	450	102
	비율	49.6	27.8	17.3	5.3	100.0	22.6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의심받은 경험	빈도	21.4	113	69	19	415	88
	비율	51.6	27.2	16.6	4.6	100.0	21.2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서의 진술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	빈도	218	104	59	19	400	78
	비율	54.5	26.0	14.8	4.8	100.0	19.6
비장애인에 비해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공정하게) 받지 못한 경험	빈도	236	109	72	17	434	89
	비율	54.4	25.1	16.6	3.9	100.0	20.5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을 도와줄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별 경험	빈도	218	95	71	22	406	93
	비율	53.7	23.4	17.5	5.4	100.0	22.9

■ 법적 권리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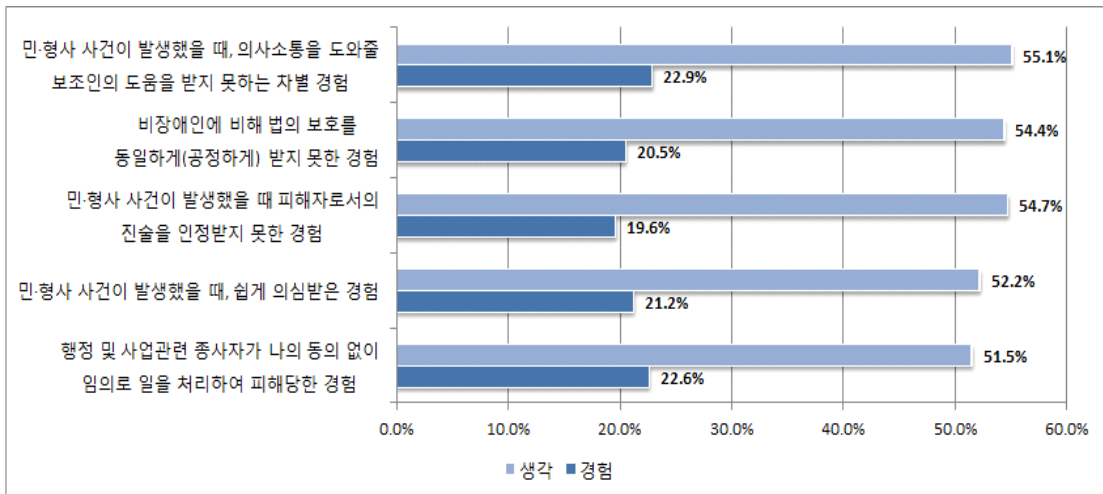
-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을 도와줄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별 경험이 55.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의심받은 경험이 54.7%, 비장애인에 비해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공정하게) 받지 못한 경험이 54.4%로 나타남.

[표 4-24] 법적 권리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합계	차별경험 있다
행정 및 사업관련 종사자가 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을 처리하여 피해당한 경험	빈도	104	154	215	59	532	274
	비율	19.5	28.9	40.4	11.1	100.0	51.5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의심받은 경험	빈도	107	147	205	72	531	277
	비율	20.2	27.7	38.6	13.6	100.0	52.2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서의 진술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	빈도	114	126	210	80	530	290
	비율	21.5	23.8	39.6	15.1	100.0	54.7
비장애인에 비해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공정하게) 받지 못한 경험	빈도	121	121	216	73	531	289
	비율	22.8	22.8	40.7	13.7	100.0	54.4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을 도와줄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별 경험	빈도	108	130	204	88	530	292
	비율	20.4	24.5	38.5	16.6	100.0	55.1

○ 법적 권리 관련 차별 경험은 다른 권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법적 권리 관련 차별 생각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법적 권리 관련 차별 경험과 생각 비교



(3)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

-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5%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시행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을 담은 조례 제정이 9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성희롱, 물리적·언어적 폭력, 괴롭힘 등의 차별행위 시정이 94.6%,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보장이 92.9% 순으로 나타남.

[표 4-25]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필요함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보장	빈도	9	24	276	223	532	499
	비율	1.7	4.5	51.	41.9	100.0	92.9
장애인 이동권 보장	빈도	14	26	252	240	532	492
	비율	2.6	4.9	47.4	45.1	532	92.5
의사소통권의 보장	빈도	15	34	269	212	530	481
	비율	2.8	6.4	50.8	40.0	100.0	90.8
투표권행사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 확대	빈도	10	42	268	203	523	471
	비율	1.9	8.0	51.2	38.8	100.0	90
자산관리, 주택구입, 전/월세 계약 거부, 임대 공간 개조 거부 등 차별행위 시정	빈도	21	42	297	171	531	468
	비율	4.0	7.9	55.9	32.2	100.0	88.1
부동산 매매 제한과 같은 차별행위 시정	빈도	27	54	279	170	530	449
	비율	5.1	10.2	52.6	32.1	100.0	84.7
금융상품 가입 시 장애인 거부와 같은 차별행위 시정	빈도	25	37	264	197	523	461
	비율	4.8	7.1	50.5	37.7	100.0	88.2
의료 검진기기 이용제한, 진료거부,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시 장애인 배제와 같은 차별행위 시정	빈도	25	38	263	202	528	465
	비율	4.7	7.2	49.8	38.3	100.0	88.1
화재 등 재난 시 비상탈출구 및 안전장치 등 이용 보장 조치	빈도	15	23	231	261	530	492
	비율	2.8	4.3	43.6	49.2	100.0	92.8

[표 4-25]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계속)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필요함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	빈도	10	32	248	237	527	485
	비율	1.9	6.7	47.1	45.0	100.0	92.1
교육·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조치	빈도	8	32	271	219	530	490
	비율	1.5	6.0	51.1	41.3	100.0	92.4
각종 영상매체 장애인 비하표현 등과 같은 차별행위 시정	빈도	12	43	263	209	527	472
	비율	2.3	8.2	49.9	39.7	100.0	89.6
각종 공연, 관람 또는 건강 증진 관련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 조치	빈도	12	27	270	222	531	492
	비율	2.3	5.1	50.8	41.8	100.0	92.6
친권 지정, 면접권 행사 등에 대한 가족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에 의한 제한과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빈도	8	42	276	201	527	477
	비율	1.5	8.0	52.4	38.1	100.0	90.5
임신·출산 제한, 입양이나 보육시설 입소 거부 등의 차별행위 시정	빈도	19	32	271	205	527	476
	비율	3.6	6.1	51.4	38.9	100.0	90.3
성생활 향유를 위한 공간·도구 사용의 제한 등의 차별행위 시정	빈도	25	57	258	187	527	445
	비율	4.7	10.8	49.0	35.5	100.0	84.5
민·형사 사건 발생 시 쉽게 의심받고, 진술이 인정받지 못하며, 조력자지원부재 등의 차별행위 시정	빈도	12	26	264	228	530	492
	비율	2.3	4.9	49.8	43.0	100.0	92.8
성희롱, 물리적·언어적 폭력, 괴롭힘 등의 차별행위 시정	빈도	12	17	232	268	529	500
	비율	2.3	3.2	43.9	50.7	100.0	94.6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을 담은 조례 제정	빈도	8	19	239	265	531	504
	비율	1.5	3.6	45.0	49.9	100.0	94.9
경상북도 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빈도	14	25	222	271	532	493
	비율	2.6	4.7	41.7	50.9	100.0	92.6

3)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조사(F.G.I)

(1) 조사개요

- 경상북도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주요 내용은 접근권과 이동권, 탈시설·자립생활, 건강권·안전권, 노동권, 법적권리, 인권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등이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함.
- 참여 대상은 총 5명이며, 모두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이며, 이 중 장애인 당사자는 2명임.

[표 4-26] 참여자 특성

구분	번호	성별
1	A	남
2	B	남
3	C	여
4	D	남
5	E	남

(2) 조사결과

① 접근권과 이동권

- A :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가 늘었긴 하나 여전히 부족하며 법정대수 기준자체가 너무 낮음. 지하철 등 기타 교통수단이 부족하며 지역이 넓은 경북 특성을 반영해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역 이동 시 이용 가능한 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콜택시는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으며, 심야 시간에 운영되지도 않음. 운영비 확대 지원을 통해 기사를 충원할 필요가 있음.
- B : 장애인 콜택시 보급이 전보다 많이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이동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공급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

고 있음. 장애인 콜택시 확대 보급이 필요함.

- C : 경북은 농촌 지역이 많으며, 농촌 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특히 심각함. 또한 경북 지역 특성상 산간, 오지 지역이 많은데 저상버스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 설계 시 저상버스 운행이 적합한 도로환경조성을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위주로 이용, 일반 차량은 그 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됨.
- E : 이동권과 접근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일상생활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음.

② 탈시설·자립생활

- A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탈시설·자립생활은 유기적인 관계임. 정책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B : 경북 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주된 기능은 재가장애인 중심의 주간보호임. 진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 거주시설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야 함.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자립생활 성공 사례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경제적 문제로 인해 퇴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현재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금액만으로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함.
- E : 탈시설을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임.

③ 건강권·안전권

- C : 장애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보조제도의 경우 65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이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 생애 주기별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장애를 고려한 진료,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 시골에 사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④ 노동권

- A : 장애인 노동환경은 상당히 열악함. 장애인 채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역시 좋지 않음.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채용박람회의 경우, 행사수준에 불과했으며 직접적인 연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음.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마련이 필요함.
- B : 인지가 가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일을 하고 싶어함.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직접적인 채용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개최를 하여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세분화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⑤ 법적권리

- C : 발달장애인이 가해자가 될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히 없음. 장애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에 경우 변호가 상당히 어려움. 장애특성에 맞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⑥ 인권교육

- A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B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단체·기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음.
- C : 인권교육은 상당히 중요함. 인권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도민을 위한 장애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공무원 대상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인권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E : 교육 의무 기관은 이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지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경로관,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

로 하는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일회성, 신청지역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제 인식개선이 되기 상당히 어려움. 따라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인권교육 강사 비용 지원이 필요함.

⑦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 A : 경북에는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음. 경북 지역의 여러 특성을 잘 반영하여 권역별 기관 운영 등의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여야 함. 민간 위탁을 하게 될 경우 강제성 결여로 인해 조사 협조가 소극적이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공공성 부여를 위해 공무원 파견 등의 민·관 합동의 운영이 필요함. 또한 변호사의 상시적 자문, 법률 처리를 위해 상근을 검토해야 함.
- B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관의 직접 운영, 사법기능이 부여 되어야 함. 민간 위탁 시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조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적 기능 결여되는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C :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요소가 각각 다름. 경북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구성 시,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서의 구성이 필요함.

⑧ 기타

- A : 학대 피해 장애인의 경우 쉼터나 주거 공간이 없어서 다시 학대를 받은 곳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및 주거 공간 및 활동보조 지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C : 타 시·도의 경우, 시·군별로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많음.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시·군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D : 장애인 복지관, 시설, 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음.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 E : 장애인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4. 경상북도 장애인 실태 및 여건 진단

○ 경상북도 장애인 실태 및 여건 진단은 다음과 같음.

[표 4-27] 경상북도 장애인 실태 및 여건 진단

실태 및 여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넓은 행정구역 : 23개 시·군 보유 도·농 복합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 격차로 인해 복지 소외 지역 대처 필요 지역 간, 지역 내 이동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감소 추세 60대 이상 장애인구 : 5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장애인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사업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본청 장애인 조례 : 13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된 지역 :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에 비해 조례 다소 부족 (광주 20개, 서울, 경기, 제주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학대, 차별, 인권 전담 기관 부재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필요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에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기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 관계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동 및 시설 접근 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로 인한 진료, 치료 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를 고려한 진료,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지원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거부, 부당해고 등의 열악한 고용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여건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 확대 필요

■ 복지 소외지역 발생 우려

-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복지 소외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이에 복지 소외 지역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지역간, 지역 내 이동권 강화가 필요함.

■ 노인 장애인구의 증가

- 경북 등록장애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장애인구는 58.82%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이에 노인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부족한 장애인 관련 조례

- 경북 본청에서 제정한 장애인 관련 조례는 총 13개이며,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한 시·군 지역은 포항 1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광주 20개, 서울, 경기, 제주는 각 19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조례가 다소 부족함.
- 이에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인권 문제 전담 기관 부재

- 경북 내 장애인 학대, 차별,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 부재하며,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며,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이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부족

-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원활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부족

- 장애인 학대, 차별 문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정기적이고 실효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

■ 낮은 인권감수성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양한 교육기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권감수성은 낮음.
-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가 필요함.

■ 장애인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부족

- 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차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장애인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접근권 및 이동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접근권 및 이동권은 문화권, 노동권 등 다른 권리 영역까지 영향을 미침.
- 이에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

■ 장애인 의료기관 부족

- 의료기관 진료 거부, 의료기구 미비로 인한 진료 제한 등 장애인의 진료, 치료 등의 어려움 겪고 있음.
- 이에 장애를 고려한 진료,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열악한 고용환경

-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차별 문제 중 채용 거부, 부당해고 등 여러 차별 사례가 발생함.
-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 및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탈시설 및 자립생활 인프라 부족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함.
-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확대 조성이 필요함.

V.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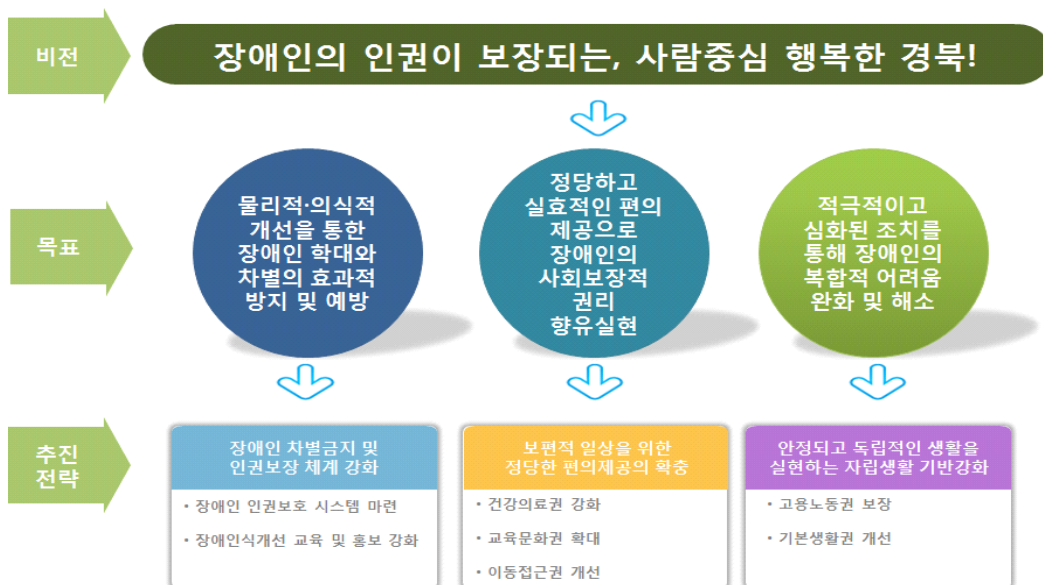
제5장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1.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1)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람중심 행복한 경북’이며, 3대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34개 세부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 정책목표는 1.물리적·의식적 개선을 통한 장애인 학대와 차별의 효과적 방지 및 예방, 2.정당하고 실효적인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보장적 권리 향유실현, 3.적극적이고 심화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복합적 어려움 완화 및 해소로 구성됨.
-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1.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2.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확충, 3.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강화로 구성됨.
- 이에 따른 핵심과제는 1.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2.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3.건강·의료권 강화, 4.교육·문화권 확대, 5.이동·접근권 개선, 6.고용·노동권 보장, 7.기본생활권 개선으로 구성됨.

[그림 5-1]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2)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사업

- 본 계획의 추진전략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영역에 8개의 세부 추진사업,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에 1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함.
- 둘째,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확충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건강·의료권 강화 영역에 6개의 세부 추진사업, 교육·문화권 확대 영역에 3개의 세부 추진사업, 이동·접근권 개선에 6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함.
- 셋째,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고용·노동권 보장에서 6개의 세부 추진사업, 기본생활권 개선에서 5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함.

[표 5-1]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사업

추진전략	핵심과제	세부 추진사업	구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확대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신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신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체계 정비	정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체계 정비	정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강화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강화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확충	건강의료권 강화	경상북도 재활병원 개원	신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신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신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확대	확대
	교육문화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신규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신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강화
	이동접근권 개선	저상버스 도입 확대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		확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		확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계속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고용노동권 보장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확대	확대
		장애학생지원사업(워크투게더 사업) 운영	신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신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신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확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확대	확대
	기본생활권 개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확대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확대	확대

추진전략 1**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핵심과제	세부 추진사업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체계 정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체계 정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2.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1)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①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 차별을 금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 장애인의 인권보장
-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장애인 권리 강화

현황 및 실태

- 2017년 3월 현재, 경상북도 본청 자치법규는 총 454개로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13개임.
- 광주 20개, 서울, 경기, 제주 19개의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권을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

■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표 5-2]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조례 수	800	546	426	495	551	470	346	428	675	432	341	406	474	469	454	451	653
장애인 관련조례	19	11	8	11	20	17	9	12	19	14	8	15	20	13	13	15	19

- 참고 : 본청 기준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2016년 5월 검색), www.moleg.go.kr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86개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경북 포함만 조례를 제정 중이며, 이 외 22개 시·군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경험이 있는 자들을 위원회에 포함하여 지역별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각 시·군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음.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조례 정비 대상 발굴 및 검토
 -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정 및 적극적 조치 사항 추가 필요 여부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각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
- 각 시·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
 -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조례 정비 대상 발굴 및 검토	장애인복지과 각 시·군	발굴, 검토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장애인복지과 각 시·군	개정 또는 제정				

■ 연차별 사업비 : 비예산 사업

②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사업목적

- 장애인 학대 예방 사업과 학대 피해 장애인 신고 접수, 신속한 조사와 보호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옹호 시스템 구축
-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옹호를 위한 체계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

현황 및 실태

- 2017년 2월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하였고,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될 예정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화 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함.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가 제정되어있으나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지는 않고 있음.
- 2015년 기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은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 중임.
- 2017년 4월, 전남은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조항을 신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추가하여 개정함.
- 대구와 인천은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전으로 장애인 인권센터 대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만을 단독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는 장애인 학대, 차별, 인권 등과 관련된 전담 기관 및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인권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인권센터의 역할 및 업무

○ 두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인권센터의 역할 및 업무

구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센터
역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종합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상담, 인식개선, 인권증진교육, 프로그램서비스 개발, 연구 등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하는 업무가 중심이며, 장애인 인권센터는 포괄적인 범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 인권센터는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사업구분 : 신규

주요 내용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 기본계획 수립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예정
- 경상북도 학대 장애인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와 연계를 통한 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및 종합적 사회복지 지원
- 법률지원단(외부) 설치, 법률 서비스 지원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은 단독형, 기능혼합형, 기능분리형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표 5-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구분	내용
단독형	· 협의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업무만 수행
기능혼합형	· 광의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 혼합) · 장애인 학대, 장애인 차별, 인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기능분리형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모두 설치
기능분리형 1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기능분리형 2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 별도 설치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형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주체는 직영형, 민·관 협동형, 위탁형, 민간형, 공모 사업형 등으로 운영될 수 있음.

[표 5-6]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형태

구분	관련근거	장점	단점	비고
직영형	조례	- 공공조직으로서의 책임성, 공공성, 서비스 지속성 확보	- 독립성·전문성·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국내 사례 없음
민·관 협동형	조례	- 지도·점검의 권한부여로 인해 민간단체의 공공성 확보,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확보	- 관리감독 부재, 사업수행의 경직성, 관의 주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위탁형	조례	-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위탁종결 후 서비스 연계 미흡, 공공성 및 책임성 저하	
민간형	-	- 자율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기대 - 관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	- 재원확보의 어려움 - 체계적 사업운영의 한계성	
공모 사업형	장애인 복지사업	- 재원확보 및 추진사업의 명확화	- 한시적 운영에 따라 서비스 지속성 저하, 전국단위의 대상으로 인해 업무범위 및 서비스 대상 과다	

- 자료 : 박윤근, 한은영(2014)

- 직영형 :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이나 장애인권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 민·관 합동형 : 공무원 파견 근무 등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민간기관의 법적 권한이 강화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음. 하지만 공무원 파견근무 등의 운영이 쉽지 않음. (성남시 장애인인권센터, 초기 2년간 공무원 파견, 상근, 현재는 공무원이 상근하지 않음)

- 위탁형 : 민간단체에 일정기간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이며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위탁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지속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서울, 경기, 전남, 광주 장애인인권센터 등 대부분의 장애인인권센터)

○ 공무원의 조직개편 문제 등으로 인해 직영형이나 민·관 합동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독립성을 가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한 위탁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위탁형으로 운영했을 때 결여되는 법적 권한을 충분히 보강해야 함.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7]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5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2,500	500	500	500	500	500

③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목적

- 법률 서비스 지원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
-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한 법률구조 활동 지원

현황 및 실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2017년 중 경상북도에 설치될 예정임.
-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사건 접수, 상담, 고발·진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 일부는 법률지원팀 내 상근변호사를 두고 있거나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피해 장애인의 법률지원을 강화함.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 시 법률지원단(외부) 설치
 - 변호사,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 구축, 법률 자문 등 필요시 공동 사건 수행
 -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관련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피해 장애인을 위해 즉각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센터 내 상근 변호사 고용 검토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8]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법률 서비스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법률지원단(외부)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상근 변호사 고용 검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검토				

■ 연차별 사업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비 내 포함

④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체계 정비

사업목적

- 분리 및 임시보호를 통한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권보호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

현황 및 실태

-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장애인 단기보호 센터'가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운영 중임.
- 타 지역의 경우, 장애인 인권센터 등의 기관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의 상담, 조사,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쉼터에서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심리 치료, 의료 및 법률지원, 자립훈련 등 피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지원 업무를 수행 중임.
- 학대 피해 장애인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과 피해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 분담 등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경상북도 피해 장애인 쉼터 현황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 시설명 : 영주장애인단기보호센터
- 인원 현황 : 정원 5명, 입소자 4명, 종사자 3명
- 추진실적 : '15년 입소 3명, '16년 11명(상담 11건 : 입소 6명, 퇴소 5명)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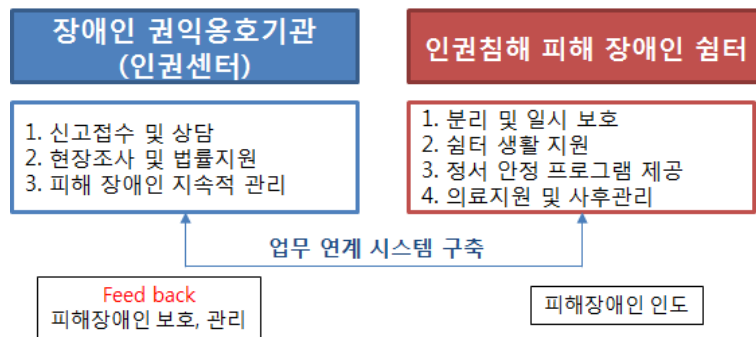
- 시설기준 : 거실(최소 33㎡ 이상), 상담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등
-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 돌봄전담 종사자 4명, 기능직 1명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시설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5년 근무), 정신보건전문요원, 심리치료사·상담사 등 전문자격자 등

사업구분 : 강화

주요내용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및 쉼터 운영 체계 정비
 - 쉼터 본연의 업무인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생활 지원 등의 업무에 집중,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와의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

[그림 5-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과의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9]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체계 정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및 관리 집중, 강화	장애인 복지과	1.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임시 보호 및 관리 집중,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과의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	장애인 복지과	1.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지속적 사후관리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5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및 쉼터 운영	600	120	120	120	120	120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체계 정비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개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통한 만족도 향상
-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현황 및 실태

- 경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2017년 3월 안동시에 개소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2016년 12월 기준, 경북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16,062명으로 경북 등록장애인의 약 9.5%를 차지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비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역할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10]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비교

구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대상자	발달장애인	장애인 일반
행위	유기 등 (대부분의 범죄행위 포함)	장애인학대 (범죄 외의 정신적·정서적 폭력도 포함)
역할	1.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2. 서비스 기관 연계 및 협조요청 3.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1.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2. 상담 및 사후조치 3.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권한	공통	1. 현장출동권한(의무) 2. 격리 및 임시보호조치권한
	지원센터	1. 경찰동행요청권한 2. 현장출입조사 및 질문권 3. 시설입소의뢰권한
		1. 현장출동권한(의무) 2. 분리 및 의료기관에 인도할 권한만 있음(스스로 시설 내 보호조치를 할 권한은 규정되지 않음)
		1. 경찰동행요청권한 규정 없음 2. 현장출입조사 및 질문권한 규정 없음(단, 현장조사 거부나 업무방해 금지 규정 있음) 3. 시설입소의뢰권한 규정 없음

- 자료 :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권익옹호’업무가 중복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서비스 연계가 주요 업무이며, 권익옹호는 부수적인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은 일반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가 주된 업무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
 - 발달장애인의 학대 피해 사례의 경우, 발달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학대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수행이 필요함.

사업구분 : 강화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 개인별 지원계획사업 : 개인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상담 및 조사,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서비스 변경 등
- 공공후견 지원사업 : 성년후견제도 지원 및 점검, 후견인 정보제공
- 권리구제사업 :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보호조치 등
-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특수학교, 의료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그림 5-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협력체계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1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확대 및 센터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5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000	600	600	600	600	600

⑥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이행 상황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인권향상

현황 및 실태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 제11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의하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을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횟수, 기간,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모니터링 사업의 수행주체인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사업구분 :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횟수, 기간 등 조례에 명시
 - 수행기관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 실태조사 : 2년마다 1회 조사, 모니터링 : 연 1회 점검

■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 및 정책반영
 - 조사횟수 : 2년마다 1회 조사
 -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지표 등을 참고하여 조사

■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이행여부 점검 및 개선 권고 조치
 - 점검대상 : 기초자치단체 청사, 공공기관, 시설 등
 - 점검횟수 : 연 1회 점검
 - 점검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이행 및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12]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조사	-	조사	-	조사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 연차별 사업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비 내 포함

⑦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사업목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교육 및 홍보, 정책, 사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통해 만족도 높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실현

현황 및 실태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 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음.
- 조례 이행 및 경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함.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설치근거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 행정부지사), 3년 임기(연임 1회 가능)
- 회의 : 연 1회 정기회 및 수시 임시회 개최
- 기능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자문, 심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정책 자문, 심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1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장애인 복지과	설치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사업비 : 비예산 사업

⑧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사업목적

-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및 상담지원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익증진

현황 및 실태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이용자에 대한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2016년 12월 기준, 경북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86개소로, 이 중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총 70개소(법인 48개, 개인 12개, 단기 10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 단원 404명이 활동 중이며, 이 중 외부단원은 269명(66.6%)임.
- 경북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외에 도 자체적으로 인권지킴이단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넓은 지역 내 이동의 어려움, 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함.

■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표 5-14]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현황

구분(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내부단원	297	174	176	135
외부단원	117	241	244	269
합계	414	415	420	404

- 인권지킴이단은 시설별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시설종사자 단원이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 및 조사의뢰 등 주요 업무내용 규정
- 인권지킴이단원을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 위촉방법·회의개최(분기1회) 등 운영규정을 마련

사업구분 :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5]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역할

구분	역할
인권옹호	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등
인권교육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인권점검	인권 점검 및 분기별 활동 정례화
사후활동	인권침해 확인, 침해사실 진정·고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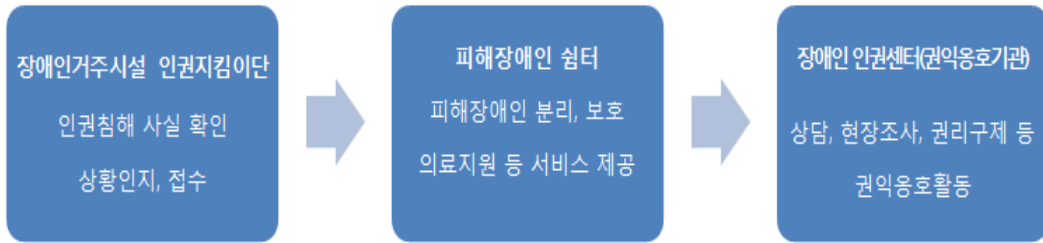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강화

- 교육지역 : 2개 권역 → 4개 권역으로 확대
- 교육내용 : 시청각 교재 보다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인권 강사 등을 초빙하여 쌍방향 교육 실시 등으로 인권 감수성 강화 방안 마련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이수 의무화 검토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피해장애인 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 발견 시 신속하게 문제 해결

[그림 5-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16]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복지과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사업비(도비 10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93	18	18	19	19	19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목적

- 지속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보장
-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현황 및 실태

-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함.
- ‘경북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4%,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5.5%,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7.1%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햇수로 10년이 되었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

○ 집단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5-17] 경상북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내용	비고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집단 교육	장애의 정의,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및 의사소통방법 등	교육시간 인정
경북도 소속 공무원 (비공무원 포함)	사이버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및 장애차별예 방교육	교육시간 인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직 군 관계자 및 업무 관련 공무원(시·군·읍·면·동)	집단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유형, 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등	교육시간 인정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요 실시기관

○ 국립재활원,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5-18] 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요 실시기관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방법
국립재활원	장애인 및 비장애인(학생 및 일반인)	집합교육, 장애체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일반교사, 학부모, 학생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사업주, 인사담당자, 비장애인근로자	EDI행동프로그램, 사이버교육, 동영상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아동, 청소년, 일반인, 노인 등	사이버교육
장애인(종합) 복지관		집합교육, 장애체험교육

○ 이 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사업구분 :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을 중심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획, 실행, 평가 등 전반적인 교육체계 구축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방법 권고
 - 인터넷 강의 등의 동영상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및 이론식 교육 지양
 - 장애체험교육, 토론 등을 통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

■ 장애 인식개선 홍보

- 공공기관, 장애인 복지관, 단체 등의 웹 사이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배너 설치
- 방송(TV,라디오), 신문, SNS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 홍보

[표 5-19] 장애 인식개선 홍보 방법

종류	내용
방송(TV, 라디오)	지역방송, 지역라디오 등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신문·잡지	장애인식개선 관련 보도자료 제공
전광판, 스티커	전광판 광고, 버스 내 인식개선 홍보스티커 부착
홍보물	버스 승강장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물 설치
홈페이지, SNS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홍보물 게시

- 경북 블로그 기자단(서포터즈)과의 협력 체계 구축
 - 경북 블로그 내 장애인식개선 홍보
 - 장애 인식개선 교육안내 및 홍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
 - 장애인의 날, 기타 장애인 행사 등 안내 및 홍보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20]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강화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배너 의무 설치	각 시·군 및 단체	설치				
광고 매체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 연차별 사업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운영비 내 포함

핵심과제	세부 추진사업
건강의료권 강화	경상북도 재활병원 개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확대
교육문화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이동접근권 개선	저상버스 도입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2)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확충

(1) 건강의료권 강화

① 경상북도 재활병원 개원

사업목적

- 권역 재활병원 건립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재활 전달체계 확립

현황 및 실태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재활전문병원이 30.7%,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17.4%순으로 나타남.
- ‘경북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 부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 등으로 인해 정당한 건강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보건복지부의 광역 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8월, 경상북도 경산시에 개원할 예정임.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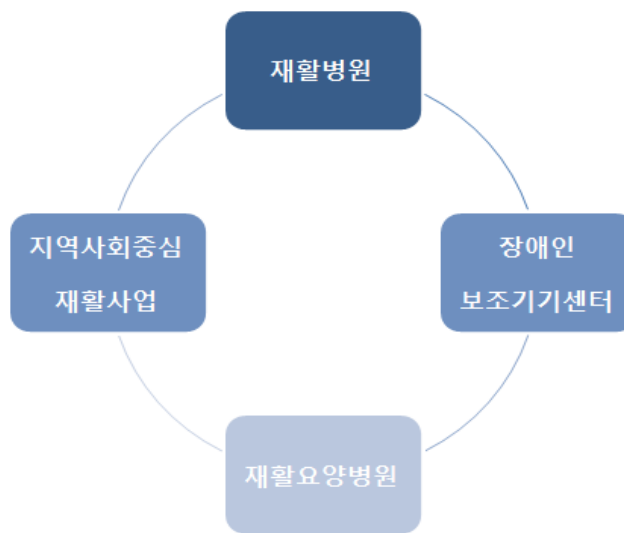
■ 경상북도 재활병원 운영

- 장애인 재활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재활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방문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 재활병원과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장기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퇴원 후 가정에서의 재활치료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등과의 연계

를 통한 의료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맞춤형 제작, 개조 등 자문 지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보건소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활성화,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 맞춤형 재활치료, 방문재활 지원

[그림 5-5] 경상북도 재활병원 의료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 이 외의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를 통한 공공의료재활 전달체계 확립
 - 의료기관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정보 제공
 - 장애인복지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사회복지지원 연계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21] 경상북도 재활병원 개원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기추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장애인복지과 경산시	설계 공모	착공	준공 개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운영	경북대학교 병원 (예정)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26,988	12,988	8,000	6,000	-	-	-
경상북도 재활병원 운영	1,500	-	-	-	500	500	500
합계	28,488	-	8,000	6,000	500	500	500

②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목적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으로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현황 및 실태

- 2015년 기준, 경상북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총 57,071명으로 경상북도 인구 수 대비 2.13%, 등록장애인 수 대비 33.95%로 나타났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로 나타남.
- 전국 권역별로 한 곳씩 설치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현재 총 1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경북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2021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경북은 20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상태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 총 10개소
 -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전북, 경기, 강원, 제주('17년 12월 개소 예정)
 - 미설치 지역 : 7개소(경북, 경남, 충북, 전남, 대전, 울산, 세종)
- 설치 대상기관 :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능 및 역할

- 장애인 치과진료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 구성·운영
-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1차·2차 장애인치과진료,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규 설치 : 1개소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공모 신청)

- '18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공모

· 지원규모 : 전국 2개 권역

· 신청기관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신청내용 : 기존시설(메디컬 교육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비 지원

· 향후계획 : '17년 9월 중앙 선정평가 및 신청기관 프리젠테이션

'17년 10월 최종선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장애인 치과진료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

○ 구강보건 공공기관(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지원, 치과의료 인력 대상 장애인구강진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치과치료차량 운행여부 검토

- 넓은 지역적 특성과 이동 및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치과 치료 장비가 구
비가 되어있는 이동식 치과치료차량 운행여부 검토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부서

[표 5-22] 경상북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보건정책과	설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사업비(설치·운영비 :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1,356	1,356	-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1,400	-	350	350	350	350
합계	2,756	1,356	350	350	350	350

- 참고 : 설치비 1,356백만원 중 56백만원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③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사업목적

- 맞춤형 보조기기 제공으로 장애인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생활편의 향상

현황 및 실태

- 2009년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설립된 후 2010년부터 지역 보조기기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2017년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 장애인보조기기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10개 지역으로 경북은 아직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음.
 - 10개 지역 :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장애인보조기구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본 장애인은 전체의 22.2%로 전문서비스 수혜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북 내 장애인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넓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함.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 :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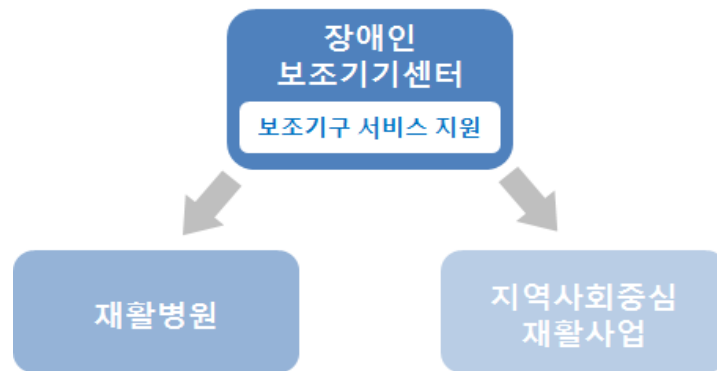
- 설치방안 :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 위탁운영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운영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업무
 - 사례관리 : 상담(전화, 온라인), 평가, 적용,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 상설전시장 운영 :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 개조, 수리제작 : 맞춤 개조, 수리, 제작, 보완·재사용 사업

- 임대사업 : 보조기기 장·단기 대여
 - 교육사업 :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 이동, 방문 서비스 :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직접 방문, 서비스 제공
- 재활병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재활병원 :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보조기기 개조, 제작 등의 서비스, 이용방법 교육 등 지원

[그림 5-6] 장애인보조기기센터 협력 체계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23]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	장애인복지과		설치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운영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사업비(설치·운영비 : 국비 50%, 도비 5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	400	-	400	-	-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운영	800	-	200	200	200	200
합계	1,200	-	600	200	200	200

④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사업목적

-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 정신장애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환경 조성 확대

현황 및 실태

- 2016년 12월 기준, 경상북도 정신장애인 등록 수는 총 7,291명으로 광역시도 정신장애인 100,069명 중 7.28%를 차지하며,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2016년 12월 기준, 광역시도별 기초건강증진센터 설치 수는 총 213개소이며, 경기도가 36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 25개소, 경남 19개소 순이며, 경북은 11개소임.
- 정신장애인가구 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수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16번째로 정신장애인가구에 비해 센터 수가 부족한 상황임.

■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2016년 12월 기준)

-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 1개소(경주)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 11개소
 - 직영(3개소) : 포항남구, 포항북구, 김천
 - 위탁(8개소) : 경주,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칠곡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홍보
-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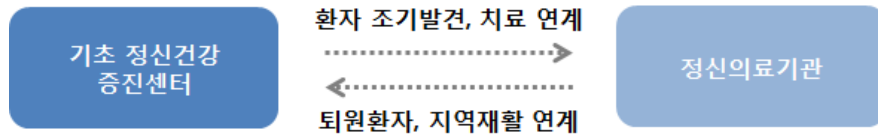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 '17년 4개소 추가 설치, 총 15개소 운영 예정
 - '17년 추가 설치 지역 : 영주, 영덕, 성주, 봉화
- 경북 내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17년 15개소 → '20년 24개소
 - 미설치 지역 : 영천,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예천, 울진, 울릉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 조기발견, 치료 및 탈원화, 재발예방
 -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 연계
 - 퇴원환자의 지역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집중사례관리를 통한 재입원 방지

[그림 5-7]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부서

[표 5-24]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보건정책과	3개소 설치	3개소 설치	3개소 설치		

■ 연차별 사업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720	240	240	240	-	-

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사업목적

-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현황 및 실태

- 장애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시에 비장애인 여성보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 2014년 장애인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235천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152천원의 53.83% 수준임.
-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구에 출산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원 확대 : '18년 106명 → '22년 125명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여성(1~6급)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지원기준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부서

[표 5-2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106명 지원	110명 지원	115명 지원	120명 지원	125명 지원

■ 연차별 사업비(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576	106	110	115	120	125

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확대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활동상황, 화재, 가스누출 등을 파악, 119와 연계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현황 및 실태

- 중증장애인의 경우, 화재 등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경북 지역 내 안동, 김천, 포항, 경주, 구미 등 총 5개 지역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 5개 지역 → 10개 지역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정 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를 위한 장비 설치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119시스템과 응급상황 정보 실시간 연계, 구조 및 구급 실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부서

[표 5-26]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장애인복지과	1개 지역	1개 지역	1개 지역	1개 지역	1개 지역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250	50	50	50	50	50

(2) 문화교육권 확대

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통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활성화

현황 및 실태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의하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주일 동안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시청이 96%로 나타났고, 영화를 제외한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이상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음.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실태 조사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2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문화예술과		조사	계획 수립		

■ 연차별 사업비(도비 10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60	-	30	30	-	-

②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사업목적

-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장애인 문화여가 생활 활성화

현황 및 실태

- 2016 장애인복지교육비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하면 경북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비율은 8.38%로 전국 평균 9.42% 미치지 못하며 분발 수준으로 나타남.
- 문화 바우처 지원, 여행 나들이 사업, 방문 문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은 여전히 TV시청, 영화 관람으로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는 농촌 지역이 많고 문화시설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개최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
 - 횟수 : 연 1회
 - 대상 : 개인 또는 단체
 - 내용 : 경상북도 내 관광지, 유적지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가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개발
문화바우처 지원금액에 맞는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28]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문화예술과			공모	공모	공모

■ 연차별 사업비(도비 10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15	-	-	5	5	5

③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사업목적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 개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현황 및 실태

- 장애인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
- 경북은 공모사업 방식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7개 기관을 지원함.
- 경북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내에서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강화됨. 법적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 방안 마련 등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실태조사 시, 교육에 대한 욕구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
 - 장애 성인의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에 따라 조사
- 평생교육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사업 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29]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복지과	실태 조사				
평생교육사업 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인재개발정책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 연차별 사업비 : 장애인 실태조사 사업 내 포함

(3) 이동접근권 개선

① 저상버스 도입 확대

사업목적

-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 장벽 해소
-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 확대

현황 및 실태

- 2016년 기준, 경상북도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140대이며, 저상버스 도입률은 12.4%로 17개 시·도 지역 중 14번째로 나타남.
- 경상북도 산간 지역과 농촌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저상버스 연료인 천연가스(CNG) 충전소가 없는 19개 시·군 지역은 2015년부터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디젤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하고 있음.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2017년 실시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2019년부터 상용화 할 예정임.

사업구분 : 확대

■ 저상버스 도입 현황 및 '17년 계획

- 2016년 기준, 6개 시 지역에서만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며, 안동시와 김천시의 경우, 천연가스(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실태를 반영하여 디젤형 저상버스를 도입함.
- 2017년에는 6개 시 지역 외 2개 군 지역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임.

[표 5-30] 저상버스 도입 현황 및 '17년 계획

구분	도입 대수(대)		계
	'16년까지 도입 현황	'17년 추가 도입 대수	
포항시	33	7	40
경주시	29	7	36
경산시	31	7	38
구미시	23	7	30
안동시	15	6	21
김천시	9	10	19
칠곡군	-	2	2
성주군	-	2	2
기타 시·군	-	6	6
계	140	54	194

- 참고 : CNG 충전소 미설치 지역(안동, 김천, 칠곡, 성주)의 경우, 디젤버스 도입
- 자료 : 일자리경제교통단 내부자료

주요내용

- 시내버스 1,133대의 30%까지 저상버스 도입 : 목표대수 340대 달성
 - '18년 73대(누계 267대) → '19년 73대(340대)
- 2020년부터는 수요에 따라 연 20대씩 도입
- 중형 저상버스 도입 검토
-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한 도로환경 개선
 - 과도하게 높은 과속방지턱 제거, 인도와 차도 간격 조정 등
 - 굴곡지점 등 도로 선형개량 등 운행에 적합한 도로환경조성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1] 저상버스 도입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저상버스 도입	일자리경제교통단	73대	73대	20대	20대	20대
중형저상버스 도입 검토	일자리경제교통단	검토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저상버스 도입	20,600	7,300	7,300	2,000	2,000	2,000

②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 콜택시 확대에 의한 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이동편의증진 및 이동 불편해소

현황 및 실태

- 수요에 비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차량으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경북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인 197대에 대한 사업비가 시·군별로 교부된 상태이나 차량 구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 운행대수는 105대이며, 시·군의 추가수요가 있을 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임.

[표 5-32]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17	12	5	9	6	2	-	7	4	16	2	3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합계
2	1	1	2	2	2	4	3	1	2	-	103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추가 보급
 - '18년 20대 → '19년 20대 → '20년 20대 → '21년 20대 → '22년 20대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	일자리경제교통단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4,000	800	800	800	800	800

③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

사업목적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편의시설 확대설치로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수준 향상

현황 및 실태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의하면 경북의 설치율은 64.8%로 전국 평균인 67.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적정 설치율 55.5% 이상은 달성하였으나 다른 시·도에 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음.
- 경북 지역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이행을 강제하는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의 건축물들이 많아 설치율이 낮으며, 이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함.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대상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 설치 기준 미적합 시설 개선 및 시정 명령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연간 목표율 수립 및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4]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편의시설 개선 및 시정조치	장애인 복지과	개선 시정조치	개선 시정조치	개선 시정조치	개선 시정조치	개선 시정조치
편의시설 설치 연간 목표율 수립 및 이행	장애인 복지과	목표율 수립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연차별 사업비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내 포함

④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접근 향상을 통한 정보사회 참여기회 확대

현황 및 실태

- 장애인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운 정보 접근으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화 생활 개선 및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함.

사업구분 : 계속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90% 지원)
- 지원품목 : 시각장애(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장애(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신청 및 보급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상담심사 → 대상자확정 → 보급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5]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정보통신과	200대	200대	200대	200대	200대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5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950	190	190	190	190	190

추진 전략 3 |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핵심과제	세부 추진사업
고용노동권 보장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확대
	장애학생지원사업(워크투게더 사업)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기본생활권 개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확대

3)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1) 고용노동권 보장

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보장

현황 및 실태

- 장애인구 증가 및 취업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 개발·제공 등을 하고 있으나 고용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 개발·제공을 하여 장애인의 참여 기회 및 소득 보장을 할 필요가 있음.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 1,316명 → 1,400명
 - 장애인복지일자리 : 급식도우미, 도서관사서 도우미 등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등
 - 장애인일반형(시간제) : 보건소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 학교등교 도우미, 병원 린넨실 도우미, 환경미화 등
 - 시각장애인안마사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대상 안마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요양보호사 보조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6]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복지과	1,316명	1,330명	1,350명	1,370명	1,400명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59,950	11,664	11,783	11,961	12,138	12,404

② 장애학생지원사업(워크투게더 사업) 운영

사업목적

- 고등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사회성 훈련 등을 실시하여 졸업 후 취업으로의 연계 지원

현황 및 실태

- 장애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에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지원사업이 서울, 서울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13개 지사에서 운영 중이며, 2017년부터 경북을 포함한 울산, 전남, 충남, 제주까지 총 1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됨.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고등부 장애학생이 취업지원 컨설팅을 위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운영
 - 신청대상 :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2·3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진로설계컨설팅, 직무체험 등 진로직업서비스 제공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습프로그램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7] 장애학생지원사업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학생지원사업 운영	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331명	331명	331명	331명	331명

■ 연차별 사업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학생지원사업 운영	295	59	59	59	59	59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사업목적

-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종합적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적응 지원

현황 및 실태

- 장애인의 경우,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전문 프로그램과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며, 취업 후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한 취업 유지관리가 미흡함.
- 2017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장애인 전문 심층상담, 취업진단과 설계에 따른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화된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 만 18세~69세 이하 취업 희망하는 장애인
 - 1단계(진단·경로설정) → 2단계(의욕·능력증진) → 3단계(집중취업알선)
- 구직역량강화, 지원고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공단에서 수행중인 전문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취업 약량 증진을 통한 취업률 제고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38]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334명	334명	334명	334명	334명

■ 연차별 사업비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1,095	219	219	219	219	219

④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사업목적

- 지역사회 및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 유도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및 인식개선 도모

현황 및 실태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1981년부터 개최되었으며, 2006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순회개최를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임.
- 2006년부터 대구, 부산, 대전, 전남, 서울, 경기 등 10개 시·도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나 경북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음.

[표 5-39]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지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구	부산	대전	전남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경기	경남	부산

사업구분 : 신규

주요내용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19년 유치
- 다양한 부대행사 및 전시 개최를 통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참여 확대
 - 장애인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검토 : 기업 및 장애인들의 관심 및 참가 유도
 - 장애인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4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공단		유치			

■ 연차별 사업비(도비 10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200	-	200	-	-	-

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활·자립생활 지원

현황 및 실태

- 경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1개 시·군 지역 내 총 39개소로 근로 장애인은 1,145명임.
- 장비,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생산품의 품질, 근로환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 장애인에게 쾌적한 근로 환경 제공이 필요함.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 연간 6~8개소
 - '18년 6개소 → '19년 6개소 → '20년 7개소 → '21년 7개소 → '22년 8개소
- 지원내용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4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장애인복지과	6개소	6개소	7개소	7개소	8개소

■ 연차별 사업비(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200	800	800	850	850	900

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 장애인근로자들의 소득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현황 및 실태

- 2016년 경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48%로 17개 시·도 지역 중 14번째 순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20개소이며, 생산품목은 사무용지류, 사무용품류, 생활용품 및 잡화, 식료품, 농산물 등이 있음.
- 경상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 시설현황 : 총 2개소(본점 1개소(안동), 분점 1개소(포항))

[표 5-42] 경상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연도별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판매액	1,166	1,331	1,478	1,880	2,180	2,605	3,007	3,530
증가율	-	14.15	11.04	27.20	15.96	19.05	15.42	17.39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총 2개소이며 도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생산품의 인식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4월, 23개 시·군 지역 중 총 11개 지역에서 전시, 홍보, 판매행사를 실시함.
 - 상주, 영덕, 군위, 성주, 김천, 경산, 칠곡, 고령, 청송, 영천, 청도

사업구분 : 강화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점진적 확대 : '18년 0.6% → '22년 1.0%

■ 장애인생산품 판촉·홍보 사업 강화

- 온라인 홍보
 - 경상북도 공식 블로그 '경북 두드림'을 이용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 지역 자치단체 등 홈페이지 내 홍보 배너 설치
- 오프라인 홍보
 - 지역 관공서,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 중인 카페 내 장애인생산품 샘플 전시 및 판매
 - 지역 축제 특별판매전 등 지역행사 내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매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경북도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0.6	0.7	0.8	0.9	1.0
장애인생산품 판촉·홍보 사업 강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강화	강화	강화	강화	강화

■ 연차별 사업비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내 포함

(2) 기본생활권 개선

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요소 해소 및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현황 및 실태

- 경북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총 11개소로 도 센터 1개소, 시·군 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북 23개 지역 중 10개 지역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임.
- 장애인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 11개소 → 13개소
 - '19년 1개소 설치(12개소) → '22년 1개소 설치(13개소)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4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장애인복지과		1개소 확대			1개소 확대

■ 연차별 사업비(도비 30%, 시군비 7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170	-	85	-	-	85

②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확대

사업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현황 및 실태

- 2016년 12월 기준, 경북 장애아동·청소년은 경북 등록장애인의 2.86% 수준임.
- 장애아동·청소년을 둔 가족들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18년 2,638명 → '22년 2,730명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45]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원인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2,638명	2,650명	2,670명	2,700명	2,730명

■ 연차별 사업비(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확대	29,500	5,800	5,850	5,900	5,950	6,000

③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지원

현황 및 실태

- 경북은 2012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3급 장애인 및 국비지원대상자 중(장애1~3급)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한정적인 이용 대상자와 제한된 서비스 이용 시간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700명 → 800명
 - ‘18년도 700명 → ‘19년도 720명 → ‘20년도 740명 → ‘21년도 770명 → ‘22년도 800명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46]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700명	720명	740명	770명	800명

■ 연차별 사업비(도비 30%, 시군비 7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12,500	2,400	2,450	2,500	2,550	2,600

④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사업목적

- 체계적인 자립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현황 및 실태

-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각 1개소 이상은 설치되어 있으며, 총 62개소가 운영 중임. 서울 7개소, 부산 6개소, 경기, 대구 5개소 순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는 2개소가 운영 중이며,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12개소임.

[표 5-4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비교

구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국비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자체사업)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대상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우선 지원	중증장애인 1급, 2급(18세 이상)
운영현황	2개소 (경주, 경산)	12개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칠곡, 울진)

- 자료 :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주간 보호, 자립 교육, 상담사업,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기술훈련 등으로 유사점이 많음.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센터 확대 2개소 추가 설치 : '17년 2개소 → '21년 4개소
 - 설치방안 :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 반영 요청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4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장애인복지과	1개소 설치			1개소 설치	

■ 연차별 사업비(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300	150	-	-	150	-

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기회 보장 및 자립생활 경험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현황 및 실태

-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방안 연구(2014)에 의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42.4%는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함.
-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 중 66.1%는 시설 생활에 불만이 없고 생활이 편하다고 응답하였고,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이 25.4%,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16.9%순으로 나타남.
- 2017년 3월 기준, 경상북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은 5개소가 운영 중이며,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이 1개소, 시비를 지원받는 곳이 2개소, 거주시설 운영 2개소로 나타남.
-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체험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자립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 확충이 필요함.

[표 5-49]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현황

시·군	체험홈 개수	'16년 1년간 이용인원	비고
경주시	1	3	도비 지원
경산시	2	5	시비 지원
	1	55	거주시설
안동시	1	21	거주시설

- 자료 : 일자리경제교통단 내부자료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 및 동료상담을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지 및 역량강화
-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실시 : 금전관리, 문화활동, 자조모임, 사회적응훈련, 활동지원 서비스 등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자립적 일상생활수행 훈련 등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추가 설치·운영

- 도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2개소 추가 설치 : '17년 2개소 → '21년 4개소
- 운영방법 : 위탁
 - 위탁대상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또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 이용정원 : 3~5명으로 제한
 - 이용기간 : 1년 이내(필요 시 연장)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50]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설치·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설치·운영	장애인복지과		1개소 설치		1개소 설치	

■ 연차별 사업비(도비 30%, 시군비 7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체험홈 주택지원	300	-	150	-	150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210	-	35	35	70	70
합계	510	-	185	35	220	70

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확대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을 통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

현황 및 실태

-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방안 연구(2014)에 의하면 탈시설 후 자립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나가서 살 집이나 집을 구할 돈이 53.1%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가 높은 편이며, 자립생활의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및 주거생활 시설 부족으로 인해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경상북도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은 1인당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정착금 지원 인원도 2015년 5명, 2016년 7명, 2017년 10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착금과 지원인원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지원금액이며 지원 받는 인원도 적은 실정임.

사업구분 : 확대

주요내용

- 연차별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인원과 금액 단계적 확대
 - 지원인원 : '18년 10명 → '22년 15명
 - 지원금액 : '18년 10백만원 → '22년 14백만원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표 5-51]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과	10명 지원	12명 지원	12명 지원	15명 지원	15명 지원

■ 연차별 사업비(도비 30%, 시군비 70%)

사업비(백만원)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확대(1인당 지원금액)	754	100 (10)	120 (10)	144 (12)	180 (12)	210 (14)

3. 기대효과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5-52] 경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내용	2017년	2018년~2022년
행정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자치법규	-	정비·확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예정)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법률서비스	-	지원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조사 : 2년마다 1회 모니터링 : 연 1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설치·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지역 2개 권역	교육지역 4개 권역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	강화
건강의료권	경상북도 재활병원	-	개원('19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	설치·운영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설치·운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5개소	24개소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106명	125명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	5개 지역	10개 지역
교육문화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여가프로그램 공모 실시	-	계획수립, 실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	확대
이동접근권	저상버스	194대	340대 달성('19년) 연 20대씩 추가보급('20~'22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197대	연 20대씩 추가보급('20~'22년)
	장애인 편의시설	-	확충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200대	200대
고용노동권	장애인 일자리 제공	1,316명	1,400명
	장애학생지원사업(워크투게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운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유치('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	8개소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0.6%	1.0%
기본생활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개소	13개소
	발달재활서비스	2,638명	2,730명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700명	800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2개소	4개소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2개소	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10명, 10백만원	15명, 14백만원

■ 행정

-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인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이 경북 내 장애인 인권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구제활동,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장 확대
- 장애인 실태조사 2년마다 1회, 모니터링 연 1회 실시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장애인 인권증진 도모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기관과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 및 인권 보장

■ 건강의료권

- 경상북도 재활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의료기관 확충,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확대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장애인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 및 복지 향상

■ 교육문화권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실시를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보장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한 개인 역량 강화

■ 이동접근권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목표대수 달성 및 연 20대씩 추가 보급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생활환경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비장애인과의 정보화 격차 해소

■ 고용노동권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 개인별 욕구와 능력에 맞는 장애학생지원사업(워크투게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진로, 직업 교육의 기회 확대 등으로 인한 자아실현 및 자립실현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지역 사회 인식개선
-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목표 달성으로 소득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확대

■ 기본생활권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가족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참여 증진 도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확대를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4. 사업비

1) 사업비 총괄

- 경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전체 34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2,294백만원으로 나타남.
- 추진전략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의 총 사업비는 9개 사업 6,193백만원, 추진전략 2.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확충의 총 사업비는 13개 사업 46,627백만원, 추진전략 3.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의 12개 사업 총 사업비는 109,474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5-53] 전체 사업비 총괄

(: 백만원)

추진전략별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40,472	38,659	27,387	27,770	28,006	162,29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1,238	1,238	1,239	1,239	1,239	6,193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확충	18,042	15,670	4,480	4,215	4,220	46,627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21,192	21,751	21,668	22,316	22,547	109,474

2) 추진전략별 사업비

추진전략 1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체계 강화

[표 5-54] 추진전략1의 사업비 종합

(: 백만원)

순번	세부 추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핵심과제 1 :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1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확대	-	-	-	-	-	비예산 사업
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설치·운영	500	500	500	500	500	2,500
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법률 서비스 지원	-	-	-	-	-	비예산 사업
4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체계 정비	120	120	120	120	120	600
5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체계 정비	600	600	600	600	600	3,000
6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	-	-	비예산 사업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	-	-	-	-	비예산 사업
8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18	18	19	19	19	93
핵심과제 2 :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1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	-	-	-	-	-	비예산 사업
합계(9개 사업)		1,238	1,238	1,239	1,239	1,239	6,193

추진전략 2 : 보편적 일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확충

[표 5-55] 추진전략2의 사업비 종합

(: 백만원)

순번	세부 추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핵심과제 1 : 건강의료권 강화							
1	경상북도 재활병원 개원	8,000	6,000	500	500	500	15,500
2	장애인가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1,356	350	350	350	350	2,756
3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	600	200	200	200	1,200
4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확대	240	240	240	-	-	720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106	110	115	120	125	576
6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확대	50	50	50	50	50	250
핵심과제 2 : 교육문화권 확대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	30	30	-	-	60
2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공모	-	-	5	5	5	15
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	-	-	-	-	비예산 사업
핵심과제 3 : 이동접근권 개선							
1	저상버스 도입 확대	7,300	7,300	2,000	2,000	2,000	20,600
2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	800	800	800	800	800	4,000
3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	-	-	-	-	-	비예산 사업
4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190	190	190	190	190	950
합계(13개 사업)		18,042	15,670	4,480	4,215	4,220	46,627

추진전략 3 : 안정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표 5-56] 추진전략3의 사업비 종합

(: 백만원)

순번	세부 추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핵심과제 1 : 고용노동권 보장							
1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확대	11,664	11,783	11,961	12,138	12,404	59,950
2	장애학생지원사업 (워크투게더 사업) 운영	59	59	59	59	59	295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219	219	219	219	219	1,095
4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	200	-	-	-	200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800	800	850	850	900	4,200
6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	-	-	-	-	비예산 사업
핵심과제 2 : 기본생활권 개선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	85	-	-	85	170
2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확대	5,800	5,850	5,900	5,950	6,000	29,500
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	2,400	2,450	2,500	2,550	2,600	12,500
4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확대 설치	150	-	-	150	-	300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	185	35	220	70	510
6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확대	100	120	144	180	210	754
합계(12개 사업)		21,192	21,751	21,668	22,316	22,547	109,474

VI.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제6장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비교

1) 법적 근거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9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7년 3월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하였으며, 2017년 각 시·도에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될 예정임.
- 장애인 인권센터의 경우, 2015년 제정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음.

2) 역할 및 업무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함.
- 장애인 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차별 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조사, 모니터링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표 6-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 비교

구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센터
대상	학대 피해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
역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종합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	상담, 인식개선, 인권증진교육, 프로그램서비스 개발, 연구 등
관련 근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9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현황

- 2017년 3월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17개 광역 시·도 지역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임.

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현황

(1)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과 장애인 학대 판정지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또한 당사자 대상, 가족 대상의 학대예방 교육교재도 개발함.
- 이 외에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국 공통의 신고시스템, 표준화된 전산시스템을 운영함.

[그림 6-1]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체계도



(2)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2017년 5월 현재,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 없음.
- 장애인 인권센터가 이미 운영 중인 지역인 전북의 경우, 관련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개정함.
- 또한,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 대구와 인천의 경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만을 단독으로 설치·운영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지난 4월,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함.

2) 장애인 인권센터 현황

- 경북을 포함한 총 13개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근거로 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등 총 7개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경남은 거창군 조례에 장애인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있으며,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며, 울산은 구 단위에서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6-2]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조항 여부 및 설치·운영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장애인 차별 및 인권증진 관련조례	○	○	○	○	○	○	○	○	○	○	-	○	○	○	○	○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조항	○	○	○	○	○	○	위원회	위원회	○	○	-	○	○	○	○	*위원회	○
실제 설치운영 현황	○	○	-	-	○	○	울산 북구	-	○	-	-	-	○	○	-	○	-

- 참고 : * 군 단위의 조례에 위원회가 있음을 의미함.(경남 거창군→위원회)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2016년 5월 검색), www.moleg.go.kr

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세부사항

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원칙

(1) 독립성

- 장애인학대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기존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2) 전문성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장애 및 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지원 및 권리구제 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
- 장애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상담 기법,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조치에 관한 이해, 구체적인 상담 실습 및 사례지원 계획 수립,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실무적인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3) 보편성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의 하나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장애인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함.

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형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주체는 직영형, 민·관 협동형, 위탁형, 민간형, 공모사업형 등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형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형태

구분	관련 근거	장점	단점	비고
직영형	조례	- 공공조직으로서의 책임성, 공공성, 서비스 지속성 확보 등	- 독립성·전문성·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국내 사례 없음
민·관 협동형	조례	- 지도·점검의 권한부여로 인해 민간단체의 공공성 확보,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확보 등	- 관리감독 부재, 사업수행의 경직성, 관의 주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위탁형	조례	- 전문성, 독립성 - 서비스 질 향상	- 위탁종결 후 서비스 연계 미흡, 공공성 및 책임성 저하	
민간형	-	- 자율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기대 - 관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	- 재원확보의 어려움 - 체계적 사업운영의 한계성	
공모 사업형	장애인 복지 사업	- 재원확보 및 추진사업의 명확화	- 한시적 운영에 따라 서비스 지속성 저하, 전국단위의 대상으로 인해 업무범위 및 서비스 대상 과다	

- 자료 : 박윤근, 한은영(2014)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설치 기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주체 및 위탁 가능 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위탁 과정

- 기준 및 방식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가능)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수행실적 및 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고려, 공개모집
- 심사주체 : 지자체에 수탁기관선정단 구성, 선정단에서 심사
- 수탁기관선정단 구성 :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한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 장애인 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변호사,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당사자 또는 그 부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 수탁기관 선정단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지자체는 선정단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제1항, 제2항의 업무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

위탁 기간 및 갱신

- 위탁 기간 : 3년 이내
- 위탁 갱신 : 재 위탁 평가를 통하여 위탁 갱신 여부 결정, 재위탁 평가시에도 수탁기관 선정단을 통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이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업무 수행실적·향후 사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음.

위탁 해지

- 시·도지사는 위탁계약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중대하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시설 및 조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용자를 위해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간접비 지출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 아래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표 6-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세부 설치기준

<p>1. 사무실</p> <p>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p> <p>나.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p> <p>다. 사무실은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공간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p> <p>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2. 상담실</p> <p>가.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p> <p>나. 상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고 이를 비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p> <p>라.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p> <p>3. 교육실</p> <p>가. 5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p> <p>나.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p> <p>4. 대기실</p> <p>가.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가족 등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 수어통역사 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대기실은 아동이나 노인 등 이용자의 연령대와 장애를 고려하여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로 설치되어야 한다.</p>

(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사업 수행인력

조직

- 실정과 업무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 구성
- 기관장은 상근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팀장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외 타 기관 종사는 불가능함.

자격요건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표 6-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력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4.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

1)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역할

■ 장애인학대 사례 지원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피해 장애인 쉼터 연계, 의료기관 인도 등)
- 장애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장애인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실시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피해 장애인 쉼터,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
-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 변호사,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비장애인, 신고의무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홍보

■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실시(2년마다 1회)
-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연1회)

2)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안)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안)은 단독형, 기능혼합형, 기능분리형 1, 기능분리형2로 총 4개의 방안으로 나눌 수 있음.

(1) 단독형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만 설치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단독으로 설치
-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하지만 장애인 차별 및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할이 다소 부족함.

(2) 기능혼합형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인권센터의 기능을 혼합하여 설치

- 장애인 학대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업무 수행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인권센터의 중복되는 업무 감소로 인해 효율성이 향상됨. 하지만 공동 운영으로 인해 각 업무의 전문성이 다소 약화 될 우려가 있음.

(3)-1 기능분리형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내 장애인 인권센터를 하부조직으로 설치

- 장애인 학대 문제를 전담으로 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내, 학대 외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 업무 연계, 지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장애인 인권센터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일개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3)-2 기능분리형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인권센터 별도 설치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인권센터를 각각 별도로 설치
- 각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중복되는 업무로 인한 혼선 및 추가 인력으로 인한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6-6]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안)

구분	내용	장점	단점
방안 1 단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의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설치 ·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업무만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가능 · 학대 집중 관리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 장애인 학대 대응에 대한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문제에 한정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부족
방안 2 기능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의의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설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 혼합) · 장애인 학대, 장애인 차별, 인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 차별,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음 · 조직 간소화로 인력, 비용 절감 · 중복되는 업무 감소로 업무 효율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공동 운영으로 각 업무의 전문성 약화 우려
방안 3 기능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센터 모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음 · 협력을 통한 원활한 업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비용 증가 · 기존의 장애인 지원 기관들의 역할, 업무 중복
방안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내 장애인 인권센터를 하부조직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연계, 지원 및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 가능 · 중복되는 업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인권센터가 권익옹호기관의 일개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
방안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 별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독립성 보장 · 역할과 기능 분담으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되는 업무로 인한 혼선 · 추가적인 인력, 비용 발생 · 방안3-1에 비해 업무 연계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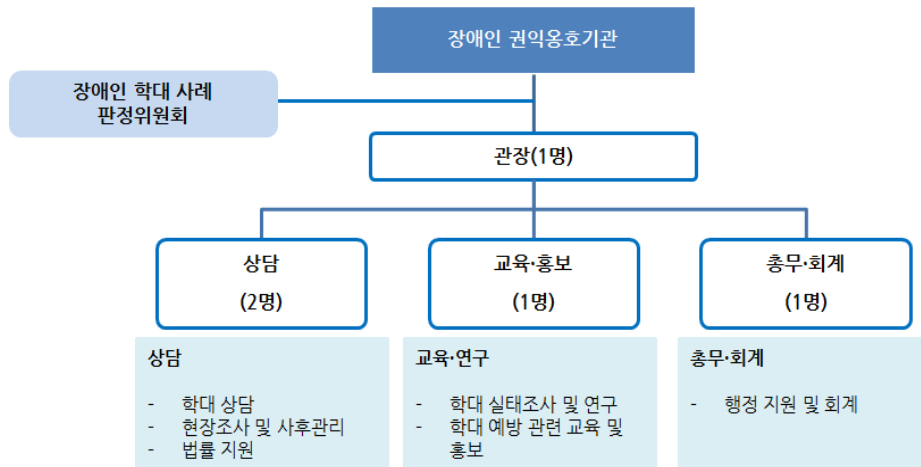
3)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인력구성 및 조직체계(안)

-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설치·운영(안)에 따른 인력구성 및 조직체계(안)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1) 단독형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단독 설치

- 필요 최소 인력 : 총 10명
 - 관장 1명, 상담 담당 2명, 교육·홍보 담당 1명, 총무·회계 담당 1명
 - 장애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및 법률지원단(외부) 운영

[그림 6-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단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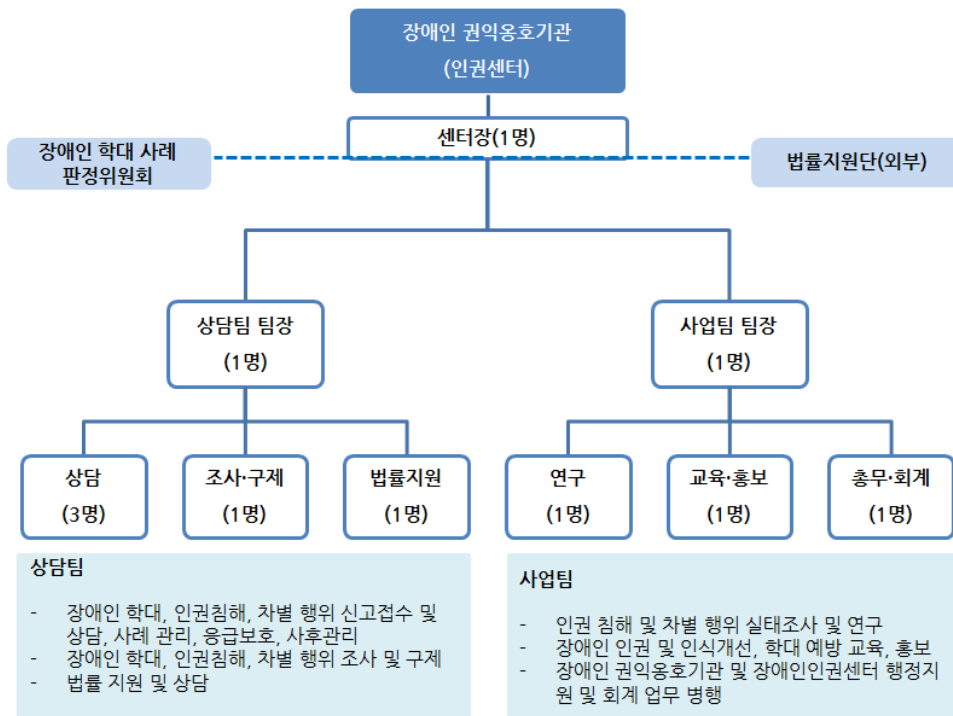


(2) 기능혼합형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혼합

○ 필요 최소 인력 : 총 11명

- 센터장 1명, 팀장 2명, 상담 담당 3명, 조사·구제 담당 1명, 법률지원 담당 1명, 연구 담당 1명, 교육·홍보 1명, 총무·회계 담당 1명
- 장애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및 법률지원단(외부) 운영

[그림 6-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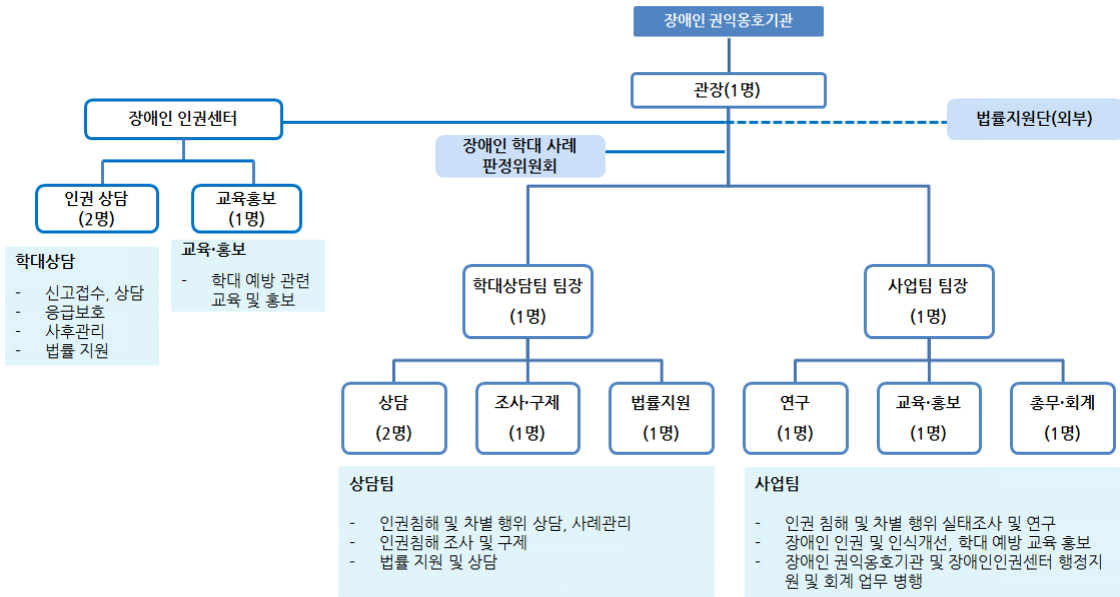


(3) 기능분리형1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 필요 최소 인력 : 총 13명

- 관장 1명, 팀장 2명, 인권상담 담당 2명, 인권 교육·홍보 담당 1명, 학대상담 담당 2명, 학대 조사·구제 담당 1명, 법률지원 1명, 연구 담당 1명, 학대 예방 교육·홍보 담당 1명, 총무·회계 담당 1명
- 장애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및 법률지원단(외부) 운영

[그림 6-4] 장애인 인권센터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분리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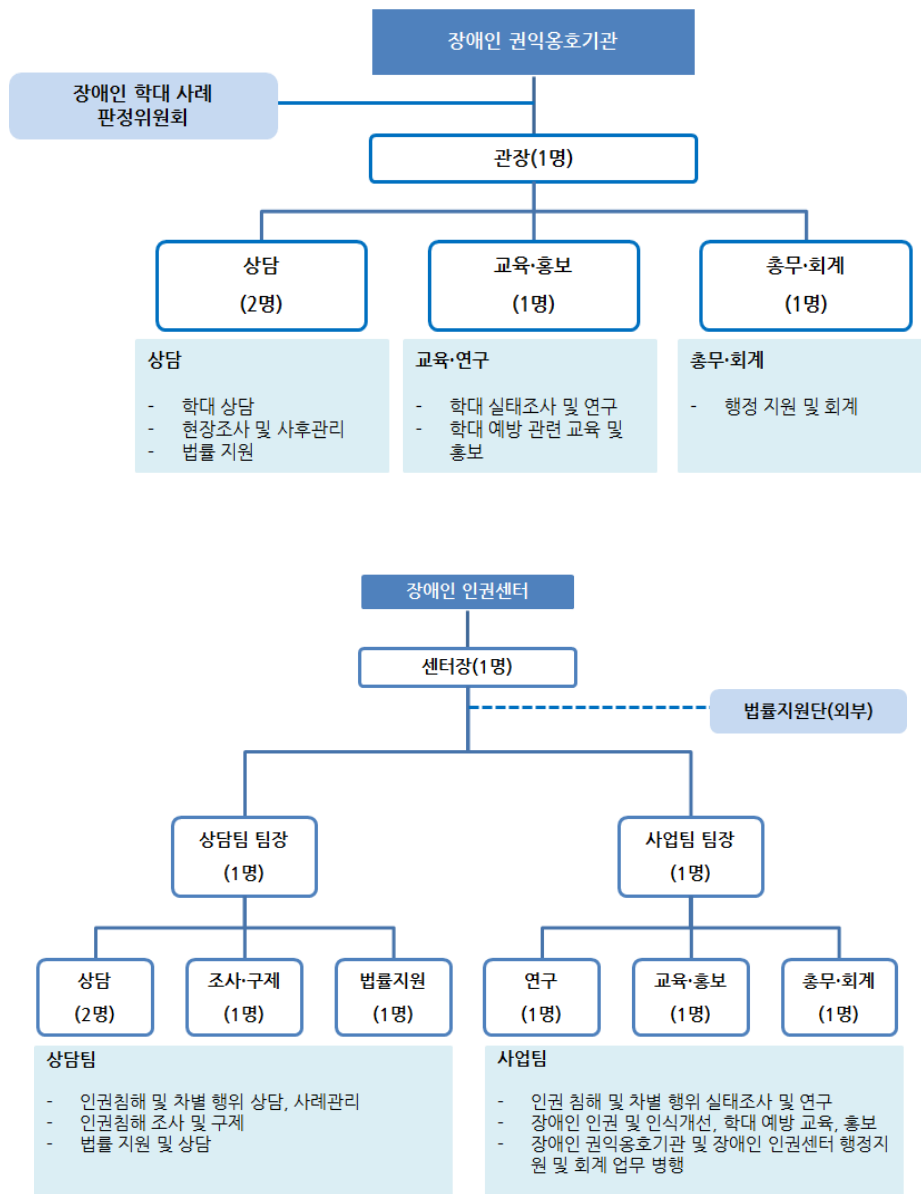


(4) 기능분리형2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별도 설치

○ 필요 최소 인력 : 총 15명

- 센터장 1명, 팀장 2명, 상담 담당 2명, 조사·구제 담당 1명, 법률지원 담당 1명, 연구 담당 1명, 교육·홍보 담당 1명, 총무·회계 담당 1명
- 관장 1명, 상담 담당 2명, 교육·홍보 담당 1명, 총무·회계 담당 1명
- 장애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및 법률지원단(외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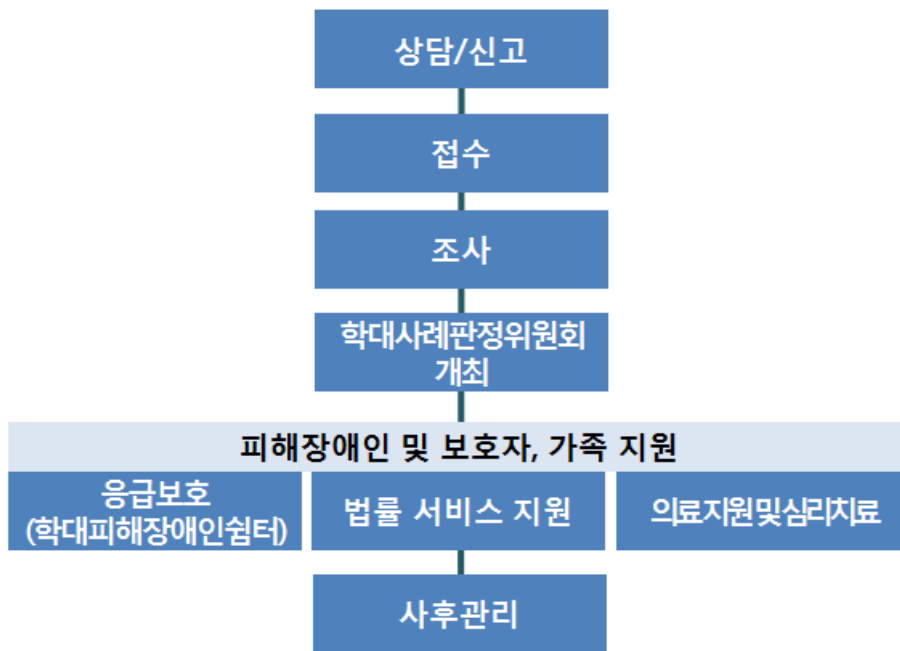
[그림 6-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분리형2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업무수행체계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의 업무수행체계도를 살펴보면, 상담/신고 등으로 사례가 접수가 되면, 조사를 통해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며, 피해장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지원 계획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대사례판정 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함.
- 계획에 따라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학대 피해장애인 쉼 터와 연계를 통해 필요 시 피해장애인의 응급보호가 실시되며, 법률 서비스 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그림 6-6]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 업무수행체계도



5) 시사점

-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장애인 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경북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인권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피해 예방·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별에 대한 상담 및 피해 회복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등 장애인 학대 예방, 차별금지,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형태는 공무원의 조직개편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직영형이나 민·관 합동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정한 심사, 공모를 통한 위탁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위탁형으로 운영했을 때 결여되는 법적 권한을 충분히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 시점에서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안)은 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인력, 비용의 절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2(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인권센터 기능혼합형)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장애인 학대 등과 관련된 업무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필요로 할 경우, 방안 3-1(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로 각각의 기능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참 고 문 헌

- 경기도. 201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경상북도. 2017.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경상북도. 2014.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경상북도. 2014.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2014.7~2018.6)
- 관계부처합동. 201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 관계부처합동. 2015. 제4차 편익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15~19년)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년~2017년)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권용신 외. 2015.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경북행복재단
- 김동화 외. 2015.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경북행복재단
- 김성희 외. 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2016.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덕성여대 산학협력단. 2016. 한국형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 서울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4. 서울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 신형익 외. 2015. 장애인 건강 향상을 위한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 이병화 외. 2015.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6~2020) 수립 연구. 경기복지재단
- 전라남도. 2015. 제2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6~2020)
- 최경임 외. 2015.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국가인권위원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6.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